4. 水原中華基督敎會(총무 김교철 목사, 김숙례 선교사-011-662-5903번)
   홈페이지 : http://home.hanmir.com/~phh21/index.htm ,E-mail:gyochulkim@hanmail.net
   (우)441-130 수원시 권선구 교동 16-2번지 수원중화기독교회
5. 천안장로교회 (담임 이정호 목사)
   외국인예배(인도인 출석) 담당 김인영 목사(댁041-551-1648)kiminyung@hanmail.net
   (우)330-071 충남 천안시 원성1동224-7번지, 천안장로교회 內 041-552-8500
6. (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 광주중화교회(석창원 목사)
   (우) 506-050 광주 광산우체국 사서함 130호
   (062)951-7993. 011-604-8139 E-mail : chwseok@netian.com
   Http://myhome.netsgo.com/kafw/
7. 광주동명교회(최기채 목사)
   외국인예배(한승진 전도사 019-602-0911) bogo911@dreamwiz.com
   (우) 501-070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1동 68-30번지, (062)232-1757 FAX 228-4290
8. 부개동교회(최웅진 목사)-선교관 외국인예배실 사용
   외국인예배담당 구재형 목사 kuhara@hosanna.net -영어설교
   중국어로 통역예배- 중국어 통역/ 이예영 선교사
   (우) 403-1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1동 257-6번지 (032)503-9741
9. 왕성교회(길자연 목사)
   외국인교회, 영어예배지도 한동희 전도사(017-511-0897)
   (우) 151-029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번지
   (02)888-4813-8 FAX 888-1739
10. 수영로교회(정필도 목사) 외국인예배(AIM)(송창현 목사/댁051-751-0557)
    (우) 613-103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3동 1072-8번지
    (051) 751-0554 FAX 751-5686
11. 부평동부교회(김용택 목사) 영어예배(필리핀) 조 인 강도사
    (고성기 장로019-204-4814, 032-519-4814 이메일 hanaeng7@kornet.net)
    (우)403-01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5동 200-2번지, 교회 (032) 515-1401-5
12. 이리중앙교회(조성천 목사) 중국인예배(원종실 교수)
    (우)570-123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 3가 49-1번지
    (063)851-4311-2 FAX 858-1385
13. 공촌교회(최고수 목사-032-561-3349) 다국적 출석
    홈페이지 http://www.kongchon.kimc.net , 이메일 kongchon@chollian.net
    (우)404-200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9-1번지
14. 신평로교회(담임 김태우 목사)
    외국인예배/베트남 선교담당 김백석 목사(댁051-202-2480)
    (우)604-030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18번지
    교회전화 051-206-6001-5 FAX051-202-1454
15. 사랑의교회 (담임 옥한흠 목사)
    세계선교부 홈페이지 http://mission.sarang.org

(우) 137-074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310-16 사랑의교회 세계선교부
사랑쉘터 / 미얀마인 담당 양병환 사역간사 (02-866-3324)
세계선교부 국내팀 (02-3479-7728)

16. 김영애 선교사 이메일 kloria@netian.com
    (암미선교회 031-574-3797 핸드폰011-390-3797)
    (우)472-83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배양리 297번지
17. 어린양교회(김치원 목사) 011-9777-8153번 포천031-542-6184번
    (우)487-810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184-3번지 어린양교회 內
18. 구미제일교회(담임 함종수 목사)054-471-8652,목양실8651
    핸드폰011-525-9091 이메일hjs8651@chollian.net)
    -중국인 근로자 사역/ 홍인덕 목사 이메일 hd0918@pastor.hosanna.net
    (우)730-350 경북 구미시 임수동 262번지 054-471-8650
19. 개명교회(담임 송기일 목사)
    외국인부 부장 이봉우 집사 댁(02)706-7961, 016-377-7961
    (우)423-032 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79번지 02-2617-1101-3번
20. 의정부천부장교회(담임 천용찬)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87-44번지 (02)872-1790
21. 안산동산교회(담임 김인중 목사)
    홈페이지http://www.d21.org, 동산지구촌 교회 담임 이종무 목사
    (019-215-9106) 031-416-3518, 하인재 장로 011-239-6577 ,
    사무실031-484-6900, 이메일 hainjae@hanmail.net
    댁-(우)425-020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주공아파트 708동402호
22. 중국인사랑교회(담당:)02-853-9589번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7-58번지 궁전상가3층 사랑교회
23. 대구서부교회(담임 남태섭 목사-댁053-252-2207)
    -베트남 근로자 , (우)700-444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2951-1번지 053-252-2205-8
24. 천성교회(담임 이귀범 목사)02-930-1003 현재 사역 불확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1068번지 중앙하이츠상가3층
25. 금곡교회/외국인 진료, 한국어 공부
26. 성생교회(담임 김두형 목사)
    외국인 담당 홍성환 전도사(H.P : 019-358-9693번) ,교회이메일/ ssc3772@hanmail.net
    (우)472-84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2리 488-117번지 031-593-3772번
27. 대구서문교회(담임 이상민 목사), 홈페이지 http://www.seomoon.or.kr
    중국인 담당(華僑) 구육리목사 핸드폰 011-823-0069 yuhli@hanmail.net
    (우)700-320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80번지 전화053-555-1134-9번
28. 충현교회(담임 김성관 목사)
    외국인 담당 송길환 목사 이메일 kiran@lycos.co.kr 핸드폰018-287-5409
    (우)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번지 충현교회 內
    국내외국인선교부 (02)552-8200 교환

29. 낙원제일교회(담임 최병현 목사) 영어예배 최근 불확실
    하경호 집사 017-331-0923, mchhkh@hanmail.net
30. 홍두석 선교사(방글라데시인 사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10번지
    제림타운 101동 111호 홍둑석,박찬경,예찬,예일
    053-624-1555, 011-9876-3206
31. 대구성명교회(담임 정준모 목사) 053-654-1201-3번 fax053-652-2582
    홈페이지 http://www.churchweb.or.kr
    (우)705-04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1동 1118-1번지
32. 대구동신교회(담임 권성수 목사)
    홈페이지 http://www.ds-ch.org, 김달석 장로
    권대열 집사 053-756-1701, 011-9852-2307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856-4
33. 장충교회/담당 장주창 전도사 02-2279-9331번
34. 비전교회/홍사욱 전도사 02-469-9823, 011-9922-982
35. 지남교회
    홈페이지 http://jinam.org, 외국인담당 김현수 목사(02-659-8253-5번)
    E-mail: DODOL@hitel.net
    주일 오전11시 우즈벡,알메니아 등 러시아어권 외국인 출석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1457번지 외국인선교사역팀
36. 평강교회(원로/이주영 목사/ 담임 하문호 목사) -동평양노회(02-902-1227)
    외국인담당 황성훈 목사(핸드폰 016-288-2453번)
    이메일 hsh2000@unitel.co.kr
    2001.3.15일 현재-태국,인도,몽골,중국,필리핀,나이제리아 등 다국적 사역
    (우)142-061 서울시 강북구 번1동 412-18번지 외국인전도위원회
37. 김홍주 선교사(안디옥국제선교회)-인도네시안 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09번지 032-812-4746
38. 서울광염교회(담임 조현삼 목사)
    외국인 담당 : 박신용 전도사
    홈페이지 http://sls.or.kr

타 교단 외국인 노동자 사역

1. 진토리교회(독립) 박원철 목사 011-9060-9692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창곡리
   2001년3월 현재 중국인 여성 여러명 출석중, 조선족이 통역
   bac1fe@hanmail.net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		
교 회 명	대표 및 실무자	주 소	전 화 번 호
게 르 방	함덕신목사 (이숙희전도사)	경기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 112	031-921-6979(교회)
소금밭교회	정용진목사	경기 안산시 와동 749-3	031-486-4757(자택) 018-858-2255
동안교회	(문희곤전도사)	서울 동대문 이문2동 346-99	962-1782(교회) 458-9202(자택)
남부교회	김연수목사 (임학규목사)	서울 종로구 창신3동 17-4	745-1903
금현교회	이상호목사	경기 포천군 가산면 금현5리 314	031-544-2190 1saho@chollian.net
익산 신광교회	최금화전도사	전북 익산시 창인동 1가165	063-843-2521
전주근로자 선교상담소	이희운목사 (이지훈사무국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 2동 2가 140-2	063-272-2794 011-836-0598(이지훈)
경산 벧엘교회	김재탁목사	경북 경산시 진량면 북1리 434-1	053-853-2234 017-817-9191
대구외국인 노동상담소	김경태목사 (박순종목사)	대구 중구 남산 4동 2635-5	053-425-0696(사무실) 053-256-0696(상담소)
주안장로교회	나겸일목사 (백경삼목사)	인천 남구 주안 1동 174-1	032-429-7071-5 011-9887-6628
인천 고백교회	강수은목사	인천 서구 석남동 477-13	032-573-6295
안산외국인 노동자센터	박천웅목사 (노정남사무국장)	경기 안산시 원곡동 791-4	031-492-8785 www.migrant.or.kr
안디옥 국제선교회	박용국장로(김홍주)	경기 안산시 원곡동 781-9,4F	031-492-2645 032-812-4746
온누리미션	하용조목사(이양묵목사,원영기,이순정,박종진간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96 온누리교회 선교관 4층	790-6052 016-352-3794(원영기)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유해근목사	서울 광진구 구의동 611 금강유치원빌딩	458-2981-2
갈릴리교회	인명진목사 (서경기목사)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267	866-3884(교회) 857-9135(사무실)
명성교회	김삼환목사 (신방현목사)	서울 강동구 명일동 330-5	3427-3031-5
새문안교회	이수영목사 (박은영선생)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142	733-8140-5 안종호장로, 심종구집사
인천 엘림 해외봉사회	하여라전도사(최혜숙, 원미나간사)	인천 중구 4동 34-17	032-766-1061 ellim93@chollian.net
대구 남산교회	진희성목사(박재수, 김병극목사)	대구 중구 남산 2동 941-22	053-253-8490
엘림미션센터	김정귀목사	서울 용산구 한남 2동 736-3	796-0170 796-8895(Fax)
대전 반들교회	김규복목사 (이기철목사)	대전 대덕구 대화동 31-43	042-621-8891, 042-621-8894
신성교회	이희수목사(백요나단전도사)	서울 강북구 미아5동 458-8	02-986-1235~8 fish153@kebi.com
군포교회	서일규목사(이동신)	경기 군포시 당동 774-8	031-52-1004
진천중앙교회	이익상목사 (이미옥목사)	충북 진천군 급내리 91	0434-33-2374
평화의 집	김영환목사 (장성은전도사)	서울 강북구 수유5동 45-23 2층	997-6230 shalomhouse@pck.or.kr
서울 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 (윤완선,최황규목사)	서울 구로구 구로 6동 98-15	857-7257 chosunjok.x-y.net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	이동훈목사	의정부시 의정부 1동 214-76 한덕빌딩 2층	031-848-0266-7 sammonaco@chollian.net
의주로교회(조선족복지선교센터)	임광빈목사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28-6 (3호선 무악재역3번출구)	723-4821-3 hmjmission2@thrunet.com

국내에서 세계선교를 하고 있는
감리교 외국인 근로자 선교협의회

I. 현황

2000년도 법무부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국내에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조선족을 포함하여 약 35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작금의 사회실정에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외국인 근로자선교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감리교단에서는 지인식 목사를 선구로 하여 1992년 1월 다 국적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외국인 근로자 선교가 시작되었으나, 타 교단에 비하여 비교적 뒤떨어져 있는 편이다.

거의 90%이상이 불법 체류자인 선교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특히 병원 진료와 치료 문제, 긴급수술, 출산 문제, 산재와 폭행사고 또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사업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투자한 금액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한다.

II.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입동기

88올림픽 이후 한국의 국민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경제가 급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근로자들은 어려운 일들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영세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즉, 한국의 노동력은 고소득 업체를 따라서 이동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저임금의 노동력이 절대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영세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과 생산비용의 증가로 수없이 파산하며 문을 닫아야 했다. 이러한 임금 상승 현상은 종래의 노동 집약적 산업에 위기를 가져다 주었고, 급기야는 정부는 기업주들의 절실한 노동력의 필요 요구에 따라 이들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입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들의 물결과 함께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3D (dangerous, dirty, difficult) 에 속하는 영세 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들은 심한 질병과 사고 속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특히 불법 체류자들은 불법 신분으로 인해 노동과 임금의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고, 복지혜택은커녕 공휴일 없는 강제 노동, 폭행, 인권 유린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한국으로 처음 들어오게 될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값싼 노동력만 생각하고, 이들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였다. 다행한 점은 처음과는 달리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 발맞추어 자신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본국으로 돌아 갈 수 조차 없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아가고 있다.

III. 국내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필요성

1. 선교가 불법화되어 있는 지역들의 복음화

공산권이나 모슬렘 국가의 대부분은 기독교 선교를 불법화하여 탄압하고 있다. 일부 복음 전파의 열정에 불탄 헌신적인 사역자들이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 국가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더구나 그 활동이 발각되면 즉시 추방되거나 구금되고 말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활발한 선교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우리의 땅으로 불러모아 주셨다. 우리는 이제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고 또 시간에 쫓겨 선교를 그만둘 이유도 없는 것이다.

2. 이질적 문화의 극복

모슬렘의 경우 삶 자체가 종교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모든 삶의 양태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의식이다. 만일 우리가 모슬렘 국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면 그들의 문화와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모슬렘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의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있으며, 타국 생활로 인한 외로움 때문에 우리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에 쉽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3. 비교적 큰 선교의 영향력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高)학력 자들로서 앞으로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회의 지도층에 속할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으로 축복된 생활을 누리게 된다면, 후에 자신들의 나라에서 선교의 역할을 크게 담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로 인해 그 나라의 복음화 또한 매우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4.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의 동원

외국 현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인력과 열악한 자원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과도한 비용 또한 선교의 큰 장애물이 된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주위에 많은 자원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국 교회에 풍부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을 준비시켜 주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으셨다.

IV. 국내 외국인 근로자 사역 내용

1. 예배와 성경공부

각 나라 언어로 드리는 예배와 성경공부 또는 소그룹 모임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인의 영혼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며,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서로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단계적으로 성장시킨다.

2. 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 선교 단체를 통하여 교회생활교육, 교리공부, 세례문답 공부를 하게 됨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며, 한국어 공부와 생활교육 등을 통하여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동안 바른 언어생활 및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안전수칙 그리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받는다.

3. 영성 세미나 및 부흥회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성 훈련을 위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구정이나 추석 연휴를 이용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기도원 또는 각 단체에서 영성 세미나 및 부흥회를 갖는다.

4. 상담 및 심방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등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를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의 신앙문제를 비롯하여 의료, 체불임금, 사고, 산재, 출국 등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격려해 주고, 숙소를 방문하여 실생활상을 점검하며, 기도제목을 나누고, 성경공부를 하는 속회모임을 갖는다.

5. 무료진료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행하게도 국내에서 합법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 선교단체 주변에 있는 의원이나 병원, 보건소 그리고 기독의사회의 도움으로 월 1회 또는 2회의 무료 진료를 실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진료 일이 아닌 때에 발생한 긴급환자에게도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사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부를 운영하여 협력병원의 도움으로 보험수가에서 50%의 의료비를 환불받기도 한다.

6. 이. 미용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입 중 최저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거의 전부를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의 한국 생활은 매우 빈곤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이들을 위하여 각 단체에 속한 자원봉사자들은 한 달에 1회 또는 2회의 무료 이용 및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쉼터 또는 합숙소 제공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오고 갈 곳이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또한 본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일시적으로 머물어야 할 숙식의 공간이 필요하며 기숙사가 없는 직장에 다니며 마땅한 거처를 구하지 못하고 떠도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된 쉼터 또는 합숙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

8. 문화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소하게 느끼기 쉬운 한국교회나 한국문화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한국인과

함께 하는 외국인근로자 위로행사, 수련회, 체육회, 성가제, 문화제, 문화 탐방, 자매교회 초청 등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연대감을 주고 있다.

9. 수습선교사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자신의 나라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목적을 두고, 그들 중 특별한 사명자를 발탁하여 선교사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 아울러 해외선교사 사명이 있거나 준비중인 한국인 예비 선교사에게도 수습 선교사 훈련의 장으로 소속 교회나 선교 단체를 개방한다.

10. 신문, 소식지 및 자료집 발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험과 간증 그리고 활동을 나누는 매개체를 제공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문, 소식지를 발행하고 또 그들을 위한 선교 사역 소식을 나누며 그들의 신앙적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신앙 자료집을 발행한다.

11. 홈페이지 운영/의정부사랑의교회 (www.fwmc.or.kr)

세계가 지구촌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고국과 가족과 친구를 떠나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느끼고 다가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한 모범 사례로서 의정부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는 나이지리아, 페루, 과테말라, 필리핀, 방글라데시 그리고 한국인 멤버들이 함께 인종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하는 장이다. 홈페이지 사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쉽게 연락하며, 교회 성원들이 서로의 관심과 격려, 사랑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사역이다. 새 시대에 발 맞춘 인터넷 목회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길 소망한다.

V. 국내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선교정책

(1) 선교사 훈련과정: 평신도 선교사로 재 파송을 하거나, 중. 장기 해외 선교 여행을 위한 수련(외국어 훈련, 풍선 만들기, 종이 접기)의 장을 제공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접근, 그들과의 교제, 그들의 언어로 된 예배와 찬양 훈련을 통하여 선교지의 경험을 간접 체험한다.

(2) 전문사역자 모임: 지역 별 사역자 모임을 통하여 프로그램 교류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해당 전문인을 초청하여 전문지식의 식견을 넓힌다.

(3) 타 교단과의 연대관계: 선교 정책 세미나 및 연합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원간의 연대관계 및 프로그램 공유를 도모하여 대외적인 교단의 위치를 고취시킨다.

(4) 후원과 지원 사업: 감리교 본부 선교국 지도 하에 특정 연회나 중, 대형 교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후원을 지원 받는다.

(5) 봉사자 연대 사업: 감리교 선교정책인 '맞들기 운동'의 지정된 단체 또는 지역의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인력을 수급하거나 제공하도록 한다.

(6) 지도자교육 사업: 각 단체에서 소명감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여 감리교단 산하

신학원을 통하여 위탁교육을 받게 한다. 그리고 감리교단에서 인정하는 수료증을 수여하여 해외 선교사 또는 교역자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7) 쉼터 프로그램: 갑자기 오갈 곳이 없어 쉴 곳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인 쉼터를 제공한다.

(8) 탁아 사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아기를 돌보아 주게 될 때, 가정회복사역을 통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들이 일 때문에 백일도 못 된 신생아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중단할 수 있다. (참고: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법이 통과)

(9) 인터넷 목회 프로그램: 각 국에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인터넷 목회는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교제의 창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목회차원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VI. 결론

외국인근로자선교는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불가불 필수적인 선교사역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의 선교의 열정을 바라보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곳으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이며,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교단 차원에서는 물론 각 교회들도 이제는 이 사역을 묵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외국인근로자선교에 대한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감았던 눈을 뜨고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이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나 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일원화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작은 힘을 하나로 모을 때 큰 일을 이루어 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는 하늘나라 확장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 분명한 세계선교이자 사회선교이며, 특수선교인 것이다.

** 부록 **

1. 감리교 외국인근로자 선교협의회 회원 주소록
2. 감리교 외국인근로자 선교협의회 임원진 (2001년도)
3. 도움이 필요한 사항
4. 후원하시려면

<부록>

1. 감리교 외국인근로자 선교협의회 회원 주소록

성남지방 열방교회 /재한 외국인선교회: 지인식* 목사 (02-443-1468/016-704-1468)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64-3 극동맨션 B03
e-mail: jeeinsik@hanmail.net

일산지방 소망교회/외국인 선교회: 김두한 목사 (031-976-2842/011-9888-584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00-13 은진빌딩
e-mail: kdhjhoo@yahoo.co.kr

김포지방 금파교회/김포외국인근로자의 집: 이경재 목사 (031-981-7794-5/016-327-7793)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21-3
e-mail:markl@chollian.net

의정부지방 사랑의교회/외국인근로자선교교회: 정정회 목사 (031-874-8077/019-224-8077)
의정부시 호원동 산 101-3
e-mail: fwmc@korea.comr / www.fwmc.or.kr

인천남지방 숭의교회/외국인선교부: 이호문 감독/김영주 목사 (032-885-8104/011-753-8104)
인천시 남구 숭의 2동 303-7 (402-012)
e-mail: james6282@hanmail.net

송파지방 새지구촌교회/외국인근로자선교부: 안기영 목사 (02-483-9902/011-212-0667)
서울 송파구 풍납1동 220-15 (138-041)
e-mail: ahm5039@hanmail.net

파주지방 금촌외국인노동자선교교회: 남기성 전도사 (031-941-3677/017-317-1324)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28-2 (413-803)
e-mail: kisung5@netian.com

화성지방 팔탄교회/외국인선교부: 공기현 목사 (031-354-9391/019-405-169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596 (445-911)
e-mail: kong0710@chollian.net

파주지방 광탄교회/외국인선교부: 박재호 목사 (031-921-0415/019-9755-7715)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14-10 (413-850)
e-mail: azcosmos@chollian.net

2. 감리교 외국인근로자 선교협의회 임원진 (2001년도)

회장: 정정회 목사 (의정부지방/사랑의교회)
총무: 김두한 목사 (일산지방/소망교회)
서기: 김영주 목사 (인천남지방/숭의교회)
회계: 박재호 목사 (파주지방/광탄교회)

3. 도움이 필요한 사항

(1) **각 단체에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동역자, 통역/번역자, 노무/법률상담자, 찬양 인도자, 반주자 등 각종 재능과 은사로 선교 사역에 도움을 줄 사역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2) **선교사역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 물품의 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나기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방비, 쌀, 김치, 부식, 라면, 커피, 녹차, 옷, 동내의 등)

(4) **특별행사시 인원을 수송할 교통수단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버스, 승합차 등)

(5) **지역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하여 초청 예배와 친교 프로그램을 갖기 원합니다.** 지역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인종과 국가와 언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임을 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후원하시려면

이메일: fwmc@korea.com
정정희 목사 (031-874-8077/019-224-8077)
선교후원 구좌: 국민은행 267-01-0017-620 (정정희이주난민선교회)
우 체 국 267-01-0017-620 (정정희이주난민선교협)

KMCMAMW for the World Mission in Korea

KMCMAMW
The Korean Methodist Church Mission Association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I. Current Situation

According to the off-the record totaliz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year 2000, the total number of the foreign migrant workers staying both legally and illegally in Korea, including the Korean-Chinese is more than 350.000. In this current social situation, migrant workers' mission to care and evangelize them has emerged as a Hot Potato. In Korean Methodist Church (KMC), a multi-nationality worship was started by some pioneers (Rev/Pastor In-sik, Jee) in Jan. 1992, but its situation and achievements are relatively not so excellent in comparison with the those of the other denominations.

Living with the migrant workers in mission field, almost 90% of whom are illegally overstaying, it is inevitable to face so many kinds of troubles and incidents. Especially, medical treatment, medical emergency, childbirth, industrial accident and violence in factory, intentionally delayed salary and deceits related with industrial investment are the most frequently happening problems.

II. Motives of the Influx of the Migrant Workers

After the '88 Olympics, the GNP of Korea and her economy was upsurged surprisingly. But, accordingly, Korean young adult workers started to abhor difficult kind of works. With this phenomenon, small manufacturing or service companies began to suffer. In other words, Korean workforce moved to high-income industries, so without low-income workforce, countless small manufacturing factories fell into bankruptcy and closed its factory. In this situation, the traditional labor-intense Korean Industry faced a great crisis with the lack of cheap workforce, and to cope with this situation, Korean Government tried to legally import the cheap foreign contractors, many of whom illegally overstayed after the contract term, while other foreigners flowed into Korea to stay and work illegally. Their work places are mostly 3D (Dangerous, Dirty and Difficult) kinds, which most Korean young adults abhor, and for this very reason, most of them are living under diseases and industrial accidents and many of them are exploited with restless and forced labor, factory violence and human right abuses without any social benefit. There have been many disputes about their status and situation at first, but they were ignored or considered lightly because of the cheap workforce provided by them.

But, fortunately, many migrant workers have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ies or to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changing economic situation of Korea. But, in Korea, there are still

many migrant workers who cannot even go back to their countries.

III. The Necessity of the Migrant Workers' Mission in Korea

1. Evangelization of the Region where the Mission is Illegalized.

Most of the Communist and Moslem countries are persecuting Christianity, illegalizing its activity in their territories. Some devout missionaries are doing their activities in many ways in those countries, but the effectiveness is relatively very small. Furthermore, if their activities are perceived by the Government, they usually are expelled or detained, not to be able to go on their missionary work. But, God took compassion on those nations and gathered their people in our own country. We don't need to run a risk any more, nor we have to give up our holy mission because of the lack of time.

2. Easy Overcoming of the Different Culture.

In case of Moslems, most of their life is the religion itself and every pattern of their lives can be called as a great religious ritual. If we go to these Moslem countries, we should face and battle against their religious culture, but to the contrary, here in our country, we don't have to do that. Rather, they have some curiosity in our own culture, and try to adapt themselves to it. Furthermore, they are in need of our comfort and help in many ways.

3. The Relatively Great Efficiency of the Mission.

Most of the migrant workers in Korea are highly educated people, who may become social leaders in the future in their countries. If they hear the Gospel, and receive Jesus Christ and come to have the blessed life with the great mystery of Heaven, they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vangelization of their countries in the future.

4. The Easy Mobilization of Various and Abundant Resources.

To accomplish an overseas mission, we always face a great limitation in the mobilization of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urthermore, the expenditure is also great. But, here in our own country, there are countless resources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migrant workers. For this great mission, God has provided and prepared abundant human, material and spiritual resources in Korean churches beforehand.

IV. Activities in Migrant Workers' Mission in Korea

1. Worship and Bible Study

The worship, Bible Studies and small group meetings conducted in their respective language help the migrant workers to receive Jesus Christ, to have conviction in their personal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to grow gradually in faith and to have spiritual fellowship with other

Christians through intercession prayers.

2. Education Program

The instruction on Christian life and cathequism study is done to help migrant workers to learn and practice desirable Christian life. Also, Korean class, safety program, health education and many teachings about life in Korea help them in many ways to adapt themselves well to the living in Korea.

3. Spiritual Retreat and Revival Meeting

To spiritually discipline and revive migrant workers, we organize spiritual retreats and revival meeting with invited preachers in prayer mountains or in other availabe organizations during the New year holidays or Chuseok holidays (Korean thanksgiving day).

4. Consultation and visitation program.

Foreign workers have various and lots of problems such as spiritual, mental and physical problems. For this, we provide counselling programs for the problems that they may encounter, such as medical problems, delayed salary, accident, industrial disaster, departure problems as well as spiritual problem and help them to find out solutions.

And through visitations to their places of work and living, we encourage them, and share their prayer topics and have meeting for Bible Study while revising their actual life condition.

5. Free Medical Treatment

For the migrant workers who are unfortunately placed out of the medical insurance benefit, we provide them with free medical treatment once or twice a month with the cooperation of the associate hospitals of the Missionary organization, Community health center and the Association of the Christian doctors. In case of emergency, we also assist the migrant workers, taking appropriate measures and steps in hospitalization process.

We also maintain a branch of the private medical insurance so that its insurance can receive the half of their medical expenditure in the associate hospitals.

6. Hair-cut Service

For the migrant workers who generally have financially difficult life because of sending almost all their income to their families, the voluntary workers in related missionary organization is offering free hair-cut services once or twice a month.

7. Providing Shelter

We are providing temporary shelter for the migrant workers who have no dwelling place because of sudden lay-off or those who need temporary place to stay before they go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8. Cultural Program

We seek to help the migrant workers to have fellowship with Koreans and to adapt themselves well to Korean churches or to Korean culture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many activities with Koreans, such as migrant workers program, retreats, sports festivals, cultural festivals, and invitation of the brother church, etc.

9. Missionary Training Program

With the clear purpose of sending back migrant workers again to their motherland as missionaries, we select among them those with special calling, instruct and discipline them so that they may accomplish their missionary work in their countries and we keep supporting them to go on their missionary activities. We also open our churches and organizations to Korean Missionary Trainees with missionary vision as a discipline place.

10. Publication of Bulletin, Newsletters and Missionary Material Book.

We publish bulletins, church guides and Missionary Material Books for the migrant workers to have the practical and necessary information and to share testimonies and also for the other churches to share missionary news and experiences and Know-hows of the migrant workers' mission.

11. Website Construction / Ex. FWMC (www.fwmc.or.kr)

The web site provides a great window through which the migrant workers can feel closer their country, their nation and their friends through today's internet technology. As a good example case, the web site of Foreign Workers' Mission Church **(FWMC, www.fwmc.or.kr)** serves as a place where the Nigerians, Peruvians, Guatemalans, Filipinos, Koreans and people of many other nationalities can feel that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beyond the difference in race, language, nation and etc. We hope that through this web site, all the migrant workers many communicate themselves better with their families and friends in their countries and may be able to share with one another their interest, encouragement, love and personal prayer topics. We also hope that through this web site, the fellowship with the Lord and with neighbors become abundant, bearing many fruits.

V. Strategy for the Migrant Workers' Mission in Korea

(1) Missionary Training Program: To provide places to send the members again as layman missionaries and places for training for mid-term and long-term missionary trip. (Language training, Balloon art and paper art instruction) with contact and discipline with the foreign culture and custom through the fellowship with the migrant workers and through the worship and praises in their languages)

(2) Migrant Workers' Mission Ministers Meeting: To extend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specialized mission area through inviting specialists and experts in those areas and through sharing programs and trouble-shooting Know-Hows in migrant workers' mission Ministers' Meeting.

(3) Solidarity with the other denominations: To uplift the status of the denomination through mission strategy seminars and union programs with the member churches and organizations of the other denominations and to remain the solidarity with them.

(4) Sponsoring and Supporting: To receive continuous support and sponsors of determined annual conferences or middle-or-big sized churches under the instruction of KMC(Korean Methodist Church) Mission Department.

(5) Solidarity of the Volunteers: To co-operate with the determined organization of the KMC mission strategy 'Lifting together movement' or with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agency to provide or to be provided with volunteers.

(6) Leader Making Program: To select migrant workers with special calling from each organization, to support them to study one of the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ies for theological instruction and finally to provide them the way to work as overseas missionaries or ministers.

(7) Shelter Program: To provide temporary shelter to those migrant workers who are in sudden need of place to stay.

(8) Baby Care Center: To stop migrant worker couple from sending their new born babies to their home countries because of not being able to care for their babies at daytime. (Ref.: the New Law for the illegal migrant workers' children to enter elementary school was passed in the congress.)

(9) Internet Ministry Program: It is a very important program both for the migrant workers to be able to have fellowship with their families and friends and for the ministers to extend their mission field.

VI. Conclusion

Migrant workers' Mission has come to occupy an important place in Korean Mission. Judging from the Korean economy in long term, migrant workers in Korea are the precious souls sent to Korea by the Lord who want to save their lost souls through the missionary passion of the Koreans and Korean churches. And for Korean churches, this is the precious opportunity given by the Lord. So, both in the level of denomination and of every individual church, we should not overlook nor ignore this ministry any more. At this very point, we need to revise our present situation of the migrant workers' mission and need to know what it really wants the most.

To accomplish this ministry with the most efficiency, first, we should open our once closed eyes and see the vision for the world mission with renewed mind. Every church, organization with this vision and already doing this ministry should realize that only when we are integrated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with one mind and one purpose, we can accomplish God's great will and vision in this nation.

The church and its members should become the instruments to give love and gospel of Christ to those who are foreigners in our country. Migrant workers' mission is a world mission, social mission, and specialized mission that surely can be a part of the ways to extend the Kingdom of Heaven.

**** Appendix ****

1. KMCMAMW member directory
2. KMCMAMW Staff (as of 2001)
3. What we need
4. Ways to give us help

<Appendix>

1. KMCMAMW member directory

Region : Song-nam city
All Nations Church/FMCK
Rev. Pas. In-sik Ji (02-443-1468/016-704-1468)
Kookdong Masion B03, Karak 2 dong, 164-3
Songpa ku, Seoul
e-mail: jeeinsik@hanmail.net

Region : Il-san city
소망교회/외국인 선교회
Rev. Pas. Doo-han Kim (031-976-2842/011-9888-5843)
Eun-jin Bdg. Seong-sa dong 500-13, Deuk-yang ku
Go-yang city, Kyonggui
e-mail: kdhjhoo@yahoo.co.kr

Region : Kim-po city
금파교회/김포외국인근로자의 집
Rev. Pas. Kyong-jae Lee (031-981-7794-5/016-327-7793)
Yang-gok Lee 421-3, Yang-chong Myun
kim-po city, Kyonggui
e-mail:markl@chollian.net

Region : Uijongbu city
사랑의교회/외국인근로자선교교회
Rev. Pas. Chong-hui Chong (031-874-8077/019-224-8077)
Hongwon dong San 101-3
Uijongbu city, Kyonggui
e-mail: fwmc@korea.comr / www.fwmc.or.kr

Region : Southern Incheon city
숭의교회/외국인선교부
Bishop Ho-moon Lee /Rev. Pas. Young-joo Kim
(032-885-8104/011-753-8104)

Soong-ui 2 dong 303-7, Nam ku
In-cheon city Zip. 402-012
e-mail: james6282@hanmail.net

Region : Song-pa city
새지구촌교회/외국인근로자선교부
Rev. Pas. Ki•young An (02-483-9902/011-212-0667)
Poong-nap 1 dong 220-15
Songpa ku, Seoul Zip. 138-041
e-mail: ahm5039@hanmail.net

Region : Pa-joo city
금촌외국인노동자선교교회
Pas. Ki-sung Nam (031-941-3677/017-317-1324)
A-dong dong 328-2
Pa-joo city, Kyonggui, Zip. 413-803
e-mail: kisung5@netian.com

Region : Hwa-seong city
팔탄교회/외국인선교부
Rev. Pas. Ki-hyun Gong (031-354-9391/019-405-1691)
Goojang Lee 596, Pal-tan Myun
Hwa-seong city, Kyonggui Zip. 445-911
e-mail: kong0710@chollian.net

Region : Pa-joo city
광탄교회/외국인선교부
Rev. Pas. Jae-ho Park (031-921-0415/019-9755-7715)
Sinsan Lee 214-10, Gwang-tan Myun
Pa-joo city, Kyonggui Zip. 413-850
e-mail: azcosmos@chollian.net

2. KMCMAMW Staff (as of 2001)

President : Pev. Pas. Chong-hui, Chong (Uijongbu/사랑의교회)
Director : Pev. Pas. Doo-han, Kim (Il-san/소망교회)
Secretary : Pas. Young-joo, Kim (Southern In-cheon/숭의교회)
Treasurer : Pev. Pas. Jae-ho, Park (Pa-joo/광탄교회)

3. What we need

(1) Voluntary workers.
Intercession prayer, interpreter/translater, labor law/legal counselor, worship leader, pianist, etc
(2) Financial support for the mission
(3) Material support for running shelter.
Especially to pass the winter.
(Heating expenditure, rice, Kim-chi, Ramen (Instant Noodle), Coffee, Tea, Clothes, inner wear for winter, etc)

(4) Providing vehicles in special events. (Bus, Van, etc)

(5) Fellowship with the local churches through invitation worship and fellowship program.

Through this fellowship, we can feel that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beyond the difference of race, nation and language

4. Ways to give us help

E-mail : fwmc@korea.com

Rev. Pas. Chong-hui, Chong (031-874-8077/019-224-8077)

Accounts : Kookmin Bank Account No. 267-01-0017-620

(Chong-hui, Chong. Migrant workers' Mission Association)

Post Office Account No. 267-01-0017-620

(Chong-hui, Chong. Migrant workers' Mission Association)

가톨릭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명 칭: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Archdiocese of Seoul, Foreign Workers' Labor Counseling Office)

장 소: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14-1 노동사목회관 4층

연락처 : 전화 02) 928-2049, 924-2798.
팩스924-2798
e- mail: fwlco@catholic.or.kr

설립연월일: 1992. 8. 27. (01. 3. 28 명동에서 현주소로 이전)

지도신부 : 도요안 (John.F.Trisolin)

실무책임 : 정순옥수녀 (Sr. Cheong, Soon-Ok Josephina)
홍세안신부 (Fr. Michel RONCIN)
정귀자 (Ms. Teresa JEONG)

1. 목 표

88서울 올림픽이후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출현은 그들이 처한 노동조건과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에서 비롯된 문제 등이 인권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예견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복음과 사회교리에 바탕을 두고 그들의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 상담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본 상담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옹호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이를 통하여 국적과 종교를 초월한 형제애를 실현함으로 하느님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한다.

2. 주요활동

1) 고충상담: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체불임금, 퇴직금, 산재, 폭행등)을 상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2) 제도개선 활동: 상담통계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충을 입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되도록 한다.

3) 문화사업: 한글교실, 컴퓨터 교실, 세미나 개최, 외국인 노동자축제, 고적답사 등을 통하여 한국 생활에 보다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의료상담: 개인적인 질병을 호소할 때 가톨릭 기관의 자선병원 및 뜻있는 의료인들의 도움으로 도와주고 있다.

5) 가정상담: 국제결혼과 가정생활의 문제상담.

6) 기타상담: 출입국관계, 송금문제 및 기타 제반문제 해결에 도움을준다.

7) 사목지원: 국가별 (필리핀, 베트남, 페루, 파키스탄) 지원

8) 쉼터운영: 개인의 힘으로 시작하고 운영되었던 쉼터가 96년 3월 교구지원으로 **베다니아**로 개원. 2001년 3월 미아 삼거리에서 보문동 상담소 뒤편으로 이전하여 방 8 개와 주방 4개 시설이 있다.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장에 문제로 단기 및 장기요양 혹은 휴양이 필요한 이들에게 쉴 곳을 제공한다.

3. 활동내용 및 경과

1) 고충상담

(1) 1992년 개원이후,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서 체불임금 해결건수가 5305건과 퇴직금, 폭행과 기타 960건을 상담하여 전화, 사업장방문, 진정, 고발을 통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범위내의 90%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2) 또한 작업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산재(해결건수 589건)건과 의료(도움건수 1115건)등의 상담을 통해, 강남, 여의도, 의정부 성모병원과 성가복지병원, 도티병원, 요셉의원, 라파엘클리닉, 찬미의 집등의 도움으로 완치하도록 도와 주었으며 301명이 쉼터를 이용해 휴식과 요양을 하였다.

(3) 국제 결혼과 가정생활의 여러 문제(가정폭력, 이혼, 종교갈등 등)와 교통 사고에 대한 보험관계, 연수생들의 적치금등 1894건을 상담 해결해 주었음.

(4) 법무부 출입국 관계, 송금문제 및 제반문제에 대하여, 1556건을 상담하여 도움을 주었다.

2) 사목지원

1992년 개원 후 필리핀, 베트남, 페루, 파키스탄, 중국등의 총53개국의 노동자들의 상담 및 지원을 하였으며 특별히 필리핀과 남미노동자들의 전담사제들이 있으며 베트남, 파키스탄, 타이 노동자들의 사목을 위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3) 문화 사업

(1) 한글교실운영

93년부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연평균 20~25명을 96년까지 운영하다 장소의 문제로 임시 쉬고, 2001년 후반부터 다시 모집, 운영하고 있다.

(2) 컴퓨터 교실

:1999년 이후 컴퓨터 교실을 2개월 씩 연내 운영하고 있음.

(3) 교육양성

1992. 9. 11-14 필리핀 근로자 세미나(80명 참가)
-노동법 소개

-같은 조건에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소개
-한국문화 소개
-공동체 결성의 필요성 강조
*세미나를 통하여 필리핀 사목 공동체 결성.

1993.1.22-24 제 1회 구정 세미나(참가인 45명)
-노동법 소개
-같은 조건에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 소개
-한국문화 소개
-각 국 문화교류
-공동체 결성의 필요성 강조
*종교, 국적, 인종을 초월한 노동자로서의 우정관계 맺음.
각 국 공동체 구성의 기틀이 됨.

1993.9 한국어 교육 실시

1993.9.30-10.4 대전 엑스포 관람 및 합숙 훈련(117명 참가)
*AWIK (Asia workers in Korea)조직-월 1회 모임

1994.2.10-12 제 2회 구정(민속절) 세미나 (8개국 104명 참가)
*AWIK를 FWIK(Foreign Workers in Korea)로 개칭
Voice 편집회의 및 행사준비

1994. 9. 20 -21 추석 세미나
행사내용 :한국노동상황에 대한 강의 및 그룹 토의와 각국 문화소개
참가인원 : 87명중 기술연수생은 14명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미얀마등 7개국)
장 소 : 인천 복자수도원 피정의집

1999. 5. 3 - 컴퓨터 교육 실시

2000. 4. 30- 재한 외국인노동자 대회년 축제
주 제 : 'ONE VOICE' 'ONE VISION' 'ONE FAMILY'
- 한마음. 한몸. 한가족으로 -
행사내용 : 1부 노동법 세미나 2부 미사 3부 각국문화행사
참가인원 : 2500여명(필리핀.중국.몽골.네팔.방글라데시.파키스탄.베트남.
스리랑카.이집트.수단.우즈베키스탄페루.인도네시아등 13개국)
장 소 : 동성고등학교 청소년회관 대강당
주 최 :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필리핀사목센터 .라파엘 클리닉
후 원 : 이주사목위원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01. 11. 4 - 인터냇 교육실시

(4) 행사

1993.3.14 문화행사로서 중앙 박물관 관람(75명 참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였음.

1993.4.7 네팔 민속잔치(네팔인 500여명 참가)-네팔의 춤, 음악등 공연

*세미나등 교육을 통하여 조직을 하였으며 결과로 자체
조직을 운영함.

1993.5.7 - 등산(80명 참석)
*네팔인 들에게는 등산을 통하여 고향을 느끼게 하였으며
산이 많지 않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체험을
하는 계기가 됨.

1993. 9. 30 - 10.4(5박6일) 추석행사 및 대전 엑스포 방문
행사내용 : 민속명절소개. 달맞이 행사. 송편나누기. 장기자랑
대전 엑스포 관람.
행사결과 : AWIK (Asia Workers in Korea) 조직- 월1회 모임
참가인원 : 171명 (네팔.방글라데시.필리핀.스리랑카.파키스탄)
장 소 : 노동사목회관 .대전드림캠프
후 원 : ICMC, 노동사목위원회, 종로성당. 연희성당 외6명(개인)

1993.11.14일 - 네팔 민속축제 (1.000명 참가)
장 소 : 명동성당 문화관

1994.5.22 - 민속촌 관광 (7개국 40명)

1995.4.23 - 제1회 재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축제
주 제 : We Are One - 우리는 하나 -
행사내용 : 1부 - 12:00 그림그리기
2부 - 13:30 미사 (최창무 주교님 집전)
3부 - 14:45 각국문화행사
4부 - 17:30 시상식
참가인원 : 약 1000명(12개국)
장 소 : 명동대성당 및 문화관
주 최 : 서울. 인천. 수원 상담소 공동 주최
후 원 : 명동대성당, 가톨릭사회복지회, 롯데복지재단

1996.4.14 - 제2회 재한 외국인노동자 축제
주 제 : Solidarity For Human Dignity And Peace
-인간의 품위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연대-
행사내용 : 1부 그림그리기.노래자랑.웅변대회
2부 미사(김수환 추기경님과 사제단8명 공동집전)
3부 문화공연 (각나라 민속춤.음악.연극공연)
* 감사패 증정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 " - 재단법인 롯데복지재단
참가인원 : 1500명
장 소 : 명동대성당 및 문화관
주 최 : 서울. 인천. 수원 상담소 공동 주최
후 원 : 롯데복지재단, 가톨릭사회복지회. 명동대성당. 이주사목위원회

1997.4.6 - 제3회 외국인노동자 축제

주 제 : A World Without Borders A Peaceful Solidarity
-국경을 초월한 세상,평화로운 연대-
행사내용 : 제1부(10:30)- 개막미사 (집전 김수환 추기경)
제2부(13:00) -문화행사(춤.노래.연극 등)
참가인원 : 2000명
장 소 : 동성고등학교 청소년회관 대강당
주 최 : 서울. 인천. 수원 상담소 공동 주최
후 원 : 롯데복지재단. 수녀장상연합회. 이주사목위원회

1998.3.16-19 - 출국예정자 제주도 여행 (16명 참가)

2000.9.30 - 대희년 외국인노동자 한가위 대축제
주 제 : 'ONE VOICE' 'ONE VISION' 'ONE FAMILY'
행사내용 : 제1부(10:30)- 개막미사 (집전 강우일 주교님)
제2부(13:00) -문화행사 (격려사 김수환 추기경님)
참가인원 : 2500여명(필리핀.중국.몽골.네팔.방글라데시.파키스탄.베트남.
스리랑카.이집트.수단.우즈베키스탄페루.인도네시아등 13개국)
장 소 : 동성고등학교 청소년회관 대강당
주 최 :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필리핀사목센터 .라파엘 클리닉
후 원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001.9.30 외국인 노동자 한가위 대축제
주 제 : 'MIGRANT WORKER = WORKER HEROES'
행사내용 : 제1부(10:30)- 개막미사 (집전 두봉 주교님)
제2부(13:00) -문화행사
참가인원 : 2500여명(필리핀.중국.몽골.네팔.방글라데시.파키스탄.베트남.
스리랑카.수단.우즈베키스탄,페루.인도네시아등 13개국)
장 소 : 동성고등학교 청소년회관 대강당
주 최 :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필리핀사목센터 .
후 원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5) 제도 개선 활동

1993.7.29 성명서 발표-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너희는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를 소홀히 말라"

1993.11.26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승소
(사건 93구16774-서울고등법원, 손광운 변호사 의뢰)
*1994.3.1부터 1-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산재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1995.1.23 성명서 발표-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저들의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하지 마시오"

1996.8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1996.11.26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 국회 제출

1997.7.14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명동성당에서 기도회 개최

1997.8.26 퇴직금 청구 소송하여 대법원 승소 판결
(사건 97다18875퇴직금 청구 소송, 손광운 변호사 의뢰)
*불법체류 노동자라 할지라도 근로 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음.

2000.1.11 포름알데하이드(포르말린) 유발성 직업병 천식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2000.9.23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심포지움 지원 (정평위주관)

(6). 조사연구 및 홍보

1992.10.18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필리핀 노동자 1000명 응답)

1993.7.4 근로자 편지 게재 6회-평화신문

1993.11.21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입국배경, 노동조건, 주거환경,
기대점등에 관하여 설문조사
(필리핀, 네팔인 각 500명 응답)

1994.3.25 Voice발행시작
근로자들의 글, 근로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게재

1999.4.18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필리핀 노동자 741명 응답)

(7) 쉼터운영(베다니아)

개인의 힘으로 시작하고 운영되었던 쉼터가 96년 3월 교구지원으로 **베다니아**로 개원,

4) 평가와 전망

(1) '92년 개소당시 본 상담소는 고통받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유일한 장소였다.

(2) 타 교구와 타 종파보다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던 것은 노사위의 관계자들, 가노장, 그리고 수녀모임 등의 관심과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맨 처음 대면한 국가는 필리핀이다. 가톨릭 신앙을 갖은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사목적 배려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차츰 타종교를 갖은 외국들도 맞이하게 되었다.

(3) 상담소 업무가 고충해결에 집중되었다. 산재해있는 노동문제, 의료, 여권, 국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4) 그 동안 53개국 2만여명이 내방상담 하였으며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톨릭의 위상이 큰 힘이 되었다.

(5) '99년부터 신규상담이 감소되었다.

원인: ① 외국인들의 상황이 노동조건으로 보면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경험을 통한 적응력,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고용주와 노동자사이에 이해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갈등이 완화된 점도 있다.

② 초기에는 몇 개에 불과했던 상담소가 오늘날 각 종단과 각 지역에 110개가 넘는 실정임으로 종파와 국가별로 분산되었다.

1) 사목적차원:

본 상담소는 아무조건 없이 동반하고 외국인들이 신봉하는 신앙을 존중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교 목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성서공부, 예배, 신학교까지 운영하는 타종교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문화적 차원:

초창기에는 상담소 업무가 외국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해결에 집중되어 사목적, 문화적 배려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 휴가를 이용한 세미나를 통해서 문화적 이해를 돕고 공동체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교육, 문화행사, 한글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소식지 voice를 출간하였다.

*행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모체 역할을 하였다.
-92년 필리핀 노동자들의 삼바기타공동체 결성
-93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94년부터 매년 노동절 축제로 국가와 종교를 초월한 각 국 문화교류와 연대형성.

타 상담소들이 늘어나면서 한결같은 문화활동을 하게됨에 따라, 본 상담소는 중복된 행사를 피해 고충해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3) 연대 관계:

3-①. 양성의 장: 다른 종파나 지역에 상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에게 연수의 장이 되었다.

3-⑦. 가톨릭 상담소들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국내: 98년 이후 가톨릭 내 연대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01. 7. 1. 실무자 모임을 시작했다.
-국제: 국제회의와 대외적인 양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을 느낀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민족과 종교를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가는 범세계적인 일임으로 국제적 연대와 나눔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5. 전망:

초창기의 10만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에는 50만명에 이르고, 상담소 또한 90년 초반에 10여개에서 2001년 현재에는 120개에 이른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13년 역사 속에 장기 체류자가 발생하고 내국인과의 결혼과 동거 등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 양육과 교육, 범죄 등이 그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큰 문제는 단속이다. 언제 어떻게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한 심리와 무차별 단속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본다. 이들이 우리사회 안에 노동자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면 마땅히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불법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들이 당하는 인권유린은 국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이제는 이들을 양성화하여 합법적으로 관리하여 산업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 노동허가제이다. 노동허가제가 실시된다면 상담소의 사업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노동허가제 안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국내노동자들

이 받는 보호를 보장받게 되고, 고충상담과 해결에도 국내노동자들 수준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고 불법 체류자들이 줄어들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도 외국인들의 효과적인 관리와 산업현장의 노동력 조달을 위해서도 현행 연수생 제도 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동 허가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교회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초창기의 상담방법인 노동문제 발생에 따른 고충상담에서 사목적인 배려와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과 상담순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신앙공동체 조성과 육성, 신앙상담, 전례, 위기상담과 고충상담, 귀환교육 등.

사회안에 노동자로서 자리 매김과 권리보장과 장기체류에 따른 의료, 자녀양육과 교육기회 보장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한다.

1) 적극적인 연대활동:

이민노동자 문제는 국경과 종교를 추월하는 문제임으로 연대활동이 중요하다.

2) 새로운 상황의 대응하기 위한 실무자양성:

사목적 배려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주변국인 홍콩, 대만, 일본, 필리핀교회의 대응과 활동을 알아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불교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소개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411-9 / 서울시 강북구 미아6동 645-112
전화 : 031-997-2301～2 / 02-945-4201
담당 : 정진우

1995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산하에 설립된 '외국인노동자 마을'의 활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는 불교의 근본인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다같이 존중하는 생명경외와 국가 인종, 신분, 계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만인 평등사상에 따라, 낯선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그들의 인권신장과 한국문화의 이해와 교류 증진을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 노동·인권 문제 상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산업재해, 임금체불, 강제노동, 부당해고, 폭행, 사망 등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의료기관 알선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기관을 알선하고 치료를 돕습니다.

3. 법률 상담

법적 대응을 요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법률 상담 및 법률 구조 활동을 지원합니다.

4. 교육 및 문화교류 활동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글교육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국 생활에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자국의 문화를 한국에 알려 서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5. 종교 활동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종교 활동을 원할 때, 이를 지원하여 종교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합니다.

6. 쉼터제공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휴식과 친교를 나눌 수 있고, 직장이동시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합니다.

7. 연대활동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인권 · 노동 · 시민 단체 등과의 연대활동을 전개 합니다.

경과 보고

1994년 1월 10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보상과 체불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경실련에서 농성을 하게 되자, 이에 경불련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고, 약 1개월 동안 진행된 농성 기간에 무료 급식과 침구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를 위한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시민 종교단체가 모여 결성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공동대책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경불련에서는 미아동 자비의 집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로 개방하고, 불자 노동자들의 종교활동을 위해 매달 법회를 개최하는 등의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위해 1995년 4월 9일 '외국인노동자 마을'을 개소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마을'은 1995년 개소이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당하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에 관한 상담 활동을 전개하였고, 한글 교실, 문화답사 등을 통해 한국 생활의 적응을 도왔습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통한 적극적인 연대활동과 농성, 법제정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96년 1월 14일에는 '네팔불자모임' 창립법회 및 새해맞이 문화한마당을 개최하였고, 이후 매년 네팔력으로 새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쉼터인 자비의 집에서는 지금까지 5쌍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결혼식이 있었고, 고국에 있는 친척이나, 한국에서 일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분들의 제사가 여러 차례 열려 조금이나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위로하였습니다.

1998년 IMF로 인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귀국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마을'의 활동이 다소 주춤하기도 하였지만, 2000년 3월 정신병원에 6년 동안 입원해 있었던 찬드라 꾸마리 구룽을 찾아내어 다시 네팔의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의견을 모으고, 2000년 11월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기본적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과 문화 나눔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현장으로 상담소를 개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2001년 11월에 김포 지역에 제2 상담소를 개소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

네팔불자모임(Nepal Buddhist Family)과 지원 활동

Nepal Buddhist Family(NBF)는 우리 센터를 이용하던 네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음. 창립법회가 열린 1996년 1월 14일에는 700여명의 네팔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네팔불자모임의 출발을 축하하고, 네팔 불자들의 전통 명절인 로싸(Lhosaar) 축제를 즐겼다. 이후 네팔불자모임은 해마다 네팔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로싸(Lhosaar) 축제를 성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가족이 죽음으로 인한 힘겨움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 의식을 직접 진행하고 있어 지금까지 100 여회의 제사를 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사에는 우리 센터와 관계하고 있는 스님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일하고 있는 네팔 노동자들이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그동안 모두 5쌍이 결혼식을 하였고, 현재 네팔과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유회, 답사 등 문화 프로그램

우리 센터에서는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네팔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전통 사찰 순례, 바다여행, 야유회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경주 지역을 전문가와 함께 답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한국 정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는 다른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와 힘을 합쳐 외국인 이주노동자 제도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노협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찬드라 구룽

7년 동안 한국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네팔 여성 찬드라 꾸마리 구룽의 발견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반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과 함께 찬드라의 정신병원 입원 경위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올바른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현재는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찬드라가 네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고,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현재 찬드라는 네팔의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향후 계획과 전망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종교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에 의하면 인간은 신에게 부름 받거나 선택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월경, 임신, 출산, 수유가 있는 인간적인 애환이 곁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은 계급과 민족이나 국가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비록 이국에 와서 차별과 멸시 속에 힘겨운 노동에 종사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인간적인 어머니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는 모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없이 그들의 존귀함과 평등함을 한국 사회에서 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상담활동의 강화를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화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화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평등한 인간으로,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의식의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과 소수자의 문제를 불교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불교 인권 · 시민단체의 활동가들과 함께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함께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쉬지 않고 정진하라고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교계의 연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는 김포의 제2상담소 개소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과 함께 만드는 운동을 만들고, 이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다시 불교계와 한국 사회에 회향하는 자세로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Buddhism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 Culture Center

Address : 411-9 Bukbyun-dong Kimpo-si KyungKi-Do
Tel : 82-31-997-2301
General Secratary : Jinwoo Jung

Inherited from the sprite of Migrant Workers' Village, which was established in 1995 by Buddhist'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 Culture Center was launched to support illegal migrant workers in Korea, who are suffering from difficult living situation, according to Buddhism which is teaching all beings are holy and equal.

Our Activity

1. Counselling about Work · Human Right

2. Medical Aids

3. Education and Culture Exchange

4. Religious Activity

5. Sharing Shelter

6. Solidarity Activity

불교 (사)좋은벗들

1. 단체 이름

(사)좋은벗들

2. 단체 소개 및 사업 내용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민간운동기구로서 북한동포돕기, 북한난민돕기, 해외동포돕기, 민족사관의 올바른 정립(상고사, 독립운동사)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143회 연속대화마당(통일대화마당)과 국내 북측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 MD 저지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3. 설립일자

가. 설립일자 : 1996. 12. 12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이름으로 창립
나. 법인허가 : 1999. 5. 6 <(사)좋은벗들>로 이름을 바꾸고, 통일부 법인 허가 받음

4. 대 표 자

가. 성 명 : 법 륜(崔錫琥)
나. 주요경력 : (사)좋은벗들 이사장 / (사)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 (사) 한국 제이티에스 이사장, 정토회 지도법사 / 월간 정토 발행인

5. 사무국

사무국장 : 정안숙
사무국 인원 : 10명

6.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정토회관 (우. 137-073)
전화 : 02)587-8996
팩스 : 02)587-8998
E-mail : goodfriends@jungto.org

7.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odfriedns.or.kr

8. 주요 활동

- 북한식량 지원
- 북한동포돕기 강연회 및 기자회견
-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난민 지원
- 통일강좌(통일미래를 준비하는 대화마당 '143)
- 해외동포 지원
- 역사기행 및 통일기행
- 조사연구사업
- 단행본 출간

〈 해외동포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 〉

▪ **사업 목적 :**

통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600만명의 해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7000만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현안문제인 통일과 교포문제들을 커다란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세계화 속에서 한민족네트워을 통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 **2001~2002년 사업 내용 :**

한국초청 사기피해 중국 조선족 돕기 활동 중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 2차 1,000명 산업연수생 입국 청원'** 활동

96년도 이전에 한국초청 사기피해를 당한 17,000명의 중국 조선족 동포들 중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심한 1,000명을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취업활동으로 얻은 금액으로 빚을 갚아 가족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활동 배경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일부 한국인들에 의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취업 사기행각이 발생했다. 많은 수의 중국 동포들이 사기피해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는데, 96년도 한국의 시민단체가 중국 동북3성을 현지 조사했을 당시만 해도 사기피해 동포가 17,000명에 이를 정도였다.

96년도 이전에 사기피해를 당한 동포들은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협회>를 결성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한국인들을 한국 검찰에 고발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벌였으나 당사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예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사기피해 동포들은 감당하기 힘든 거액을 사기당함에 따라 가정 경제가 파탄나고 그로 인해 가정이 와해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 정도가 실로 막심하였다. 조선족 교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와 마침내 97년도에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협회> 대표단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정부와 시민단체에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여 빚을 갚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청원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인에 의한 사기행각으로 중국 조선족 동포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너무나 크기에 사기피해 동포 1,000명을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취업 입국시켜 주는 특별 조치를 해 주었다. 당시 정부는 2,000~3,000명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시켜 주기로 약속했으나, 한국경제가 IMF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1,000명을 우선 입국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한국의 경제사정이 다소 호전되는 것을 보아 추가 입국시키기로 약속했었다.

사기피해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아서 현재 사기피해 동포들 중에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사망자만 해도 326명이나 된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협회>는 마지막으로 형편이 가장 어려운 사기피해 동포 1,000명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시켜 줄 것을 정부에 청원했다.

(사)좋은벗들은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협회>를 도와 청원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 **앞으로의 활동 방향 :**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취업하게 되는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 동포 1,000명이 한국의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취업활동을 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즉, 상담소를 개설하여 취업 활동과 한국 생활에서의 고민 등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최서연 교무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소장

1. 이주노동자 지원의 목적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의 이주노동자 지원의 목적은 삼동윤리(三同倫理)의 실천이다. 삼동윤리의 실천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한 시대를 호흡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삼동윤리는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에 의하여 제창된 세가지 윤리강령이며 동원도리(한울안-한이치), 동기연계(한집안-한권속), 동척사업(한일터-한일꾼)이 그것이다. 정산종사는 「삼동윤리는 앞으로 세계인류가 크게 화합할 세 가지 대동의 관계를 밝힌 원리이니, 장차 우리 인류가 모든 편견과 편착의 울안에서 벗어나, 한 큰 집안과 한 큰 권속과 한 큰 살림을 이루고 평화안락한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기본 강령이다」라고 하였다.

동원도리는,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동기연계는, 모든 인류를 포함한 생명체가 동포 즉, 우주의 한 근원 한 기운에서 나온 한 형제이므로 한 공동운명체로 알아서 최선을 다해 서로의 향상을 도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동척사업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의 세계사업이니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모든 일이 올바른 개척사업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즉, 모든 인류가 어울려서 서로 영향을 주고 고쳐주고 자체 개선하면서 낙원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다.

2.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활동소개 및 경과

본 센터의 활동은 2000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스리랑카 스님들을 중심으로하는 스리랑카인들의 공동체인 자비도량이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원불교 파주교당의 신축예정 부지에 있는 집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주선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탕에 깔려있는 문제가 언어소통임을 알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면서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할 때는 관련 기관으로 안내하고, 이주노동자들과 우리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간의 신뢰와 친목을 축적하게 되었다.

한국어교실은 처음부터 체계를 세워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실제 수업일이 15주가 되면 1기의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되, 출석률 70%이상, 중간 및 기말고사에서 평균60점 이상인 학습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도중에 사정이 생겨 수업을 못하게 되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하여 다음 주로 이어지게 하여, 개강일은 정해져도 종강일은 유동적으로 되게 하였다.

한국어교실의 활동 경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000년 4월17일~7월2일: 1기 한국어교실 (2명 수료)
· 9월12일: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한가위사랑방 (1회)
· 9월17일~2001년 4월29일: 2기 한국어교실 (2명 수료)
· 2001년 4월22일: 대각개교절 기념으로 이주노동자와 함께 점심나누기 및 한국문화 체험(전통다도)
· 5월13일~9월16일: 3기 한국어교실 (2명 수료)
· 9월30일~10월2일: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한가위사랑방 (2회)
· 10월7일~현재: 4기 한국어교실

3.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요활동

우리센터의 주요활동은 한국어교육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의사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센터에서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 상당하는 양질의 한국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사 연수과정'을 마쳤거나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있게 활동할 것을 약속한 사람에 한하여 채용하였다. 역량을 갖추고 뜻을 함께 하는 이들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고자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용 교재가 상담소 별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센터에서는 이들을 보완하여 더욱 유용한 교재를 개발하려고 한다.

한국어교육과 함께 병행하고 있는 활동이 컴퓨터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그리고 의료 및 생활상담, 대리송금이다. 이는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의료 상담의 경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의료공제회 가입을 주선하고 있으며 헌 옷, 신발 등 필요한 물품을 임의로 취득할 수 있는 '은혜마트'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4.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우리센터의 활동은 시작한 시기가 일천하여 이렇다할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작년부터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정해진 장소가 없이 현지의 원불교 시설(교당)의 공간을 일요일마다 이용하는 이동교실 수준이었다. 올해 7월에야 공간을 마련하고 10월28일에 외국인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이제야 진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셈이다.

그럼에도 평가와 전망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교실을 통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우리처럼 조직이 갖춰지지 않고 시작에 불과한 작은 단체의 경우 비교적 손쉽게 이주노동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의 의지와 역량이 있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동정심이 아닌 인간애로써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각각이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를 달리하고 있지만, 일단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가 있으며 이 기회를 통하여 다른 욕구, 가령, 한국문화를 체험한다거나 필요한 물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거나,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비롯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움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한국어능력이 기수를 거듭하며 향상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을 보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험하고 진정한 인류애를 실현하는 길을 전망하게 되었다.

우리센터에서는 이제 장소를 마련하였으므로 한국어교육과 함께 앞으로 전반적인 이주노동자 활동에 동참하며 삼동윤리의 실천의 장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센터의 재정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상근활동가 채용의 길이 열릴 것이다. 조금은 느리고 미미하더라도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 연 혁 ◎

· 2001년 1월2일: 원불교 서울교구사무국 외국인노동자교화 담당 교무 발령.
· 1월30일~2월28일: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30일 기도
· 4월11일~6월27일: 이주노동자 자원활동가 교육 참가 (주최: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성공회人)
· 7월7일: 원불교 서울보은회에서 외국인노동자활동 3년간 후원 결의.
· 7월20일~8월21일: 외국인센터설립 기도
· 7월22일: 원불교 양천교당 교의회에서 설립 지원을 결의.
· 8월16일: 원불교 서울교구 상임위원회에서 센터 설립 인가.
· 8월22일~10월3일(수요일): 특별천도재
· 9월1일: 현판식
· 9월13일~9월20일: 한국어교실 자원활동 교사 신규 모집. 3명 채용.
· 10월28일: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봉불 및 개소식.

◎ 조 직 ◎

아직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소장: 최서연 교무

한국어교실 주임: 최서연 교무

자원봉사: 한국어교실 - 정은주, 최연재, 김지영.

센터 관리 - 이진임, 최승만.

Report on the Activity for the Foreign Migrant Workers in Korea by Won Buddhism Seoul Foreigners' Center (WSFC)

Rev. Seo-yeon Choe
Director of WSFC

The purpose of our activity for the foreign migrant workers in Korea is to realize the Samdong Morality (the Morality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of Identity). The first Principle of Identity, "All doctrines have the same origin," suggests that each religion should expand beyond its own boundaries to open up to other religions, since all religions share One Truth and the same goal.. The second Principle of Identity, "All living beings are correlated by the same force of life," suggests that the human race ought to live as brothers, free from fighting or resentment, since all human beings are of one family. The third Principle of Identity, "All enterprises are for the same purpose," suggests that all human enterprises and assertions ne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rather than rejecting one another, in order to construct a better world on earth.

We found that helping the foreign migrant workers is one of the ways to pursue the Morality, and started a free Korean class for them last year. Lots of the foreign migrant workers are facing with many problems in Korea. We noticed that offering a qualified Korean class to them will help them solve the problems from the ground. Communi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for human beings to understand and go together. By expressing oneself correctly and by understanding other's expression correctly, the workers will get over the difficulty in living other countries.

Our class is operated by the systematic curriculum with qualified volunteers who finished the course of teaching Korean as the second language or majoring Korean education at the university. Most of the students who had attended the class sincerely improved their Korean proficiency significantly. This is one of the reward we get from the activity.

Not only the Korean education, we also help them by counseling about any kind of problems in their life. We offer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Korean culture and life during holidays and distribute free clothes and other materials for those who need them.

Due to the lack of experience and man power, we don't have ability to expand our activity to other field rapidly. We will do this step by step.

<첨부1> **서울외국인센터 추석행사**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한가위 사랑방.

민족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오갈 곳이 없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인정을 나누고 이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

대상: 외국인 이주노동자 (17명 참석)
일시: 9월30일-10월2일 (2박3일)

세부내용:
9월30일(일) ~ 접수
15:00 환영식
15:30 행사진행 설명, 자기 소개
16:00 송편만들기 및 평가
18:00 송편찌기 및 식사 준비
19:00 식사, 설거지, 정리
20:00 추석에 대한 소개 및 자국의 명절 소개
22:00 취침

10월1일(월) 07:00 기상 및 세면
08:00 아침식사준비, 식사, 숙소정리
10:00 추석 조상 합동제사
11:00 안산으로 이동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추석행사 참관, 4명만 참가)
18:00 센터로 돌아옴. 저녁식사준비
19:00 식사, 설거지, 정리
20:00 오락, 한국노래 배우기(우리우리 은혜속에)
22:00 취침

10월2일(화) 07:00 기상 및 세면
08:00 아침식사준비, 식사.
숙소정리후 남산한옥마을 탐방.

<첨부2> 서울외국인센터 한국어교실 중급 기말시험

어 휘 · 문 법

I. 보기와 같이 [ ]에서 ( )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여 쓰십시오.
<보기> 서점에서 (책)을 삽니다.
[의자 연필 책 책상]

1. 아파서 ( )에 갑니다.
[경찰서 운동장 은행 병원]

2. 어제 눈이 많이 와서 ( ).
[추워요 더워요
시원해요 넓어요]

II. 보기와 같이 밑줄친 말과 바꿀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오늘은 바빠서 못 갑니다.
①아파서 ②피곤해서
☞ ③시간이 없어서 ④추워서

3. 음식이 너무 달아서 많이 먹지 못해요.
①설탕이 많아서 ②기름이 많아서
③소금이 많아서 ④고추가루가 많아서

4. 공책이 있어야 하니까 꼭 가져오세요.
①보내야 하니까 ②필요하니까
③좁으니까 ④편리하니까

5. 의정부 근처에는 공장이 많습니다.
①가까운 곳에는 ②사람들이 많이 사는
③사람들이 많이 아는 ④조용한

6. 그 식당은 냉면을 잘해요.
①음식점 ②제과점 ③상점 ④책방

III. 보기와 같이 연결된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춥다 - 덥다
①차다 - 짜다 ②앉다 - 쉬다
☞ ③크다 - 작다 ④닫다 - 끝나다

7.위 - 아래
①앞 - 뒤 ②사이 - 옆
③가운데 - 밑 ④전 - 밖

8 출발하다 - 도착하다
①타다 - 내리다 ②내다 - 주다
③얻다 - 받다 ④들다 - 가다

IV. 명사에 맞는 동사를 연결하세요.
<보기> 버스 — 타다

9. 우유	마시다
10. 사진	입다
11. 모자	쓰다
12. 구두	타다
13. 청소	찍다
14. 옷	자다
15. 잠	신다
	하다

V. 맞는 단위를 연결하십시오.
<보기> 연필 — 자루

16. 자동차	마리
17. 강아지	개
18. 소주	병
19. 사람	대
20. 종이	통
21. 책	권
22. 수박	장
	명

VI. ( )안에 맞는 것을 골라 쓰십시오.
<보기> 동생은 방(에서) 쉽니다.
23. 길( ) 물을 뿌립니다.
24. 아기( ) 우유를 먹였습니다.
25. 교무님( )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26. 칠판( ) 글씨를 씁니다.
26. 어디( ) 살아요?
27. 설날 부모님( ) 세배를 드렸습니다.
에서 에 에게 께서 께

VII. 다음 글의 ( )안에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누나에게

그동안 잘 있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동생들도 잘 있겠지요. 모두 무척 보고 싶어요.

이번 여름에 제주도에 (㉠). 친구들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주도는 한국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누나는 지금도 영어공부를 하나요? 저는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스리랑카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그럼 (㉡).

4월 10일

니말 올림

28. ㉠에 맞는 말을 고르십시오.

①가려고 해요 ② 왔어요.

③가니까요. ④오세요.

29. ㉡에 맞는 말을 고르십시오.

① 감사합니다.

② 안녕히 계세요.

③ 잘 가세요.

④ 또 오세요.

VIII. 다음 글의 ( )안의 단어로 맞는 것에 ○표 하고, 아래 문제에 답하십시오.

A: 안녕하세요?

B: 네, 무엇(을/를) 도와드릴까요?

A: 네, 한국으로 소포(과/와) 엽서(을/를) 보내려고 해요.

B: 소포(은/는) 250그램이니까 3,540원이고, 엽서(은/는) 5장에 1,386원 이에요.

A: 여기 5천원있습니다.

B: ㉠거스름돈 받으세요.

A: 수고하세요.

30. 두 사람은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①병원 ②은행 ③공항 ④우체국

31. ㉠과 비슷한 말을 고르세요.

①큰돈 ② 잔돈

③빌린돈 ④ 작은돈

32. 다음을 읽고 한국말로 쓰십시오.

250그램( )

3540원( )

1,386원( )

33. 다음 수를 한국말로 쓰십시오.

1392년 ( )

10월 9일 ( )

1월 31일( )

12시6분8초( )

1시 29분( )

7시 41분( )

재단 법인 한국 이슬람교 광주 이슬람 성원

경기도 광주시 역동 48-9 Tel : 031-765-0070, Fax : 765-0071, e-mail : abdullahjeon@hanmail.net

1. 한국내 이주 노동자 현황

90년대에 들어 서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한국내 노동자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3D업종에 대한 한국 노동자들의 취업 기피로말미암아 가내 수공업 및 소규모 중소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이 한국에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로 이하여 중소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한국 정부는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입을 결정 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인해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초기의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정식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환율 차이로 인한 고임금에 만족하며 지내던중 한국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서한국 노동자와의 현격한 임금 격차와 한국내에서의 높은 생활비 문제로 인하여 좀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타 기업에 불법취업을 하게 됨으로서 불법 취업자가 갑자기 증가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회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사실상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현재 한국내 불법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는 대략 20,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들은 현재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한국민들의 편견과 질시 속에서 언제 경찰이나 이민국 직원들의 검문검색에 걸려 추방될지 모르는 긴장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국가는 방글라대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이란, 중국,우즈백키스탄, 같은 저개발 도상국이다.

2.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및 그외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 성원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제를 접하게 되었고 여기서는 본 성원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상담하던 중 발견한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문제점들만 다루기로 하겠다.

1). 인권 문제

이주 노동자들과 상담에서 그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업주들이나 동료 한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당하는 욕설이나 구타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모독 또는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으로서 상담자들 중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 취업자라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이를 한국내 어느 기관에도 하소연 하거나 진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이들이 구타를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 무조건 추방을 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를 그저 참고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2). 임금 체불 문제

임금체불 또한 중요한 문제로서 이주 노동자들의 40%가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연 지불을 경험하였으나 이또한 전혀 이를 신고 또는 진정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3). 사회 보장 문제

불법 이주 노동자들은 모두 의료 보험이나 산재 보험과 같은 사회 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어 지병으로 인해 병원에 갔을 때 비싼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고 작업 중 다치는 일이 있어도 전혀 그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3. 본 성원의 지원활동 현황

본 성원에서는 광주 지역 외국인 보호 협의회를 결성하여 회원들의 자율적 정화를 위한 정보에 따라 사고 및 범죄(마약, 도박, 강,절도, 폭행 등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1) 인권 문제

외국인 근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그들과 상담을 통하여 인권 침해 사실을 발견 하였을시 이를 해당 지방 노동청 근로 감독관실에 대리 진정하여 그 프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 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업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선입관과 지식을 계몽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업주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다.

2). 임금 문제

임금 체불시 이를 또한 지방 노동 사무소 근로 감독관실에 대리 진정하여 체불 임금을 받아 주고 있다.

3). 사회 보장 문제

본 성원과 광주 지역 의사 협의회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나 의사 협의회 회장의 추천으로 전문의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하였고 인도적 차원에서 진료비중 30_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광주 보건소를 통하여 전염병 및 무료 건간 진단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보다 잘 한국에 적응하고 취업 시 일터에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겠끔 한국어 강좌 및 한국 문화, 역사, 또는 관습, 습성 등에 대한 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업주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3. 이주 노동자 지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요망사항

현재까지 본 성원의 지원 활동은 광주 지역 내에 국한되어 왔고 그 대상 또한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활동을 하는 타 종교 및 사회 단체와 연합하여 그 대상 및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러므로써 사회 여론을 일으켜 한국 정부가 좀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나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겠끔 해야 하겠다.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내 거주는 한국 경제 구조 및 그 필요성에 이한 이미 사회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고등교육 이상을 수료한 인력들로서 훗날 이들이 고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 이미지가 얼마나 좋게 설명되어 질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으며 그들 국가는 우리상품에 미래의 고객이자 우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에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여서는 않되며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같은 인간으로서 비록 종교, 언어 피부 색깔, 풍습 등이 다를 지라도 그들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Kwang Ju Masjid

Jeon Goo Wang
Kwang Ju Masjid / Secretery General

1. Main activities of support emigrant labores :

- Our Masjid established Foreign Muslim Association and though this association, We prevent any kind of crimes just like, narcotic, gambling, robber, and etc. by information from members for purification themselves.

We have lecture for foreign labores about Korean culture, way of life and other things which can give some useful knowledges for their successful adjustment in Korea including Korean language lecture.

a. Activity of protection of human right.

We have visited factory regular to have meeting with foreign labor and owner. From the meeting, if we find some violation of human rights, we not only apply petition at local labor government office but also consider the best possible measure to keep similar from happening again.

b. Activity of livelihood protection

- We have control the conflicts because of different religion when they use lodging house together with different religion person and give any kind of support for keeping their minimum living environment.

We negotiated with local Association of doctor to reduce 30-50%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cost for foreign laborers who dosen't have health insurance.

Beside of those, we have cooperated with local Government health center to give freely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c. We have application petition to labor department,

when the wages of foreign laborer is delayed.

2. The prospect and evaluation of support activity for foreign laborer.

a. We are very sure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regulation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foreign laborer.

1. To solve the different wages between foreign and local laborer.
2. To set up the regulation for delaying wages.
3. To solve the unequaled man and woman when Korean woman marry with foreign man.

b. Korea will face very serious in developing countries for economy, politic and culture if government Korea continue to turn away his face human rights of foreign laborer in Korea, and will lose very potential buy who will be a good supporter in very near future.

<참고자료 협동조합의 원칙>

협동조합의 원칙

(1) 제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으로서,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고,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① 이 원칙은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합 참여를 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협동조합인은 저절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자신들이 표방하는 가치를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경제적 압력과 정부의 규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의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들이 온전히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협동조합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② ICA는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 <협동조합은 성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고,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탄생 때부터 기초가 되어 온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방침으로서 협동조합은 개인 즉,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③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는 의미는 협동조합이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서, 많은 경우에 협동조합이 특정 집단이나 제한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들에게 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주택협동조합은 한정된 조합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며, 노동자협동조합은 제한된 수의 조합원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이유도 이와 같은 점에서 이해되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④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이라는 말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합원의 의무는 조합마다 다르지만 투표권의 행사, 회의 참석, 조합사업 이용, 필요시 자본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계속 강조되어야 할 일련의 의무이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과 조합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⑤ 협동조합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조합원 가입에 성(性)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면 교육이나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과 같도록 해야 한다.

⑥ 협동조합은 자신들의 활동이나 새로운 조합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집단과 소수민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자선'이 아니라 협동조합 활동의 기능성에 대한 신중하고 실천적이며 혁신적인 판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한다.

⑦ 조합원에 관한 원칙은 '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 있다.

사회적이라 함은 먼저 계층에 따른 차별을 생각할 수 있다.

협동조합운동은 초기부터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이것이 19세기의 다른 사상과 협동조합 사상이 구분되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이라 함은 윤리적 측면과 어떤 경우에는 민족성을 포함한 문화적 측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수한 문화집단들이 조직한 협동조합도 다른 문화집단의 협동조합의 조직화를 방해하지 않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비조합원을 착취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할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존재할 권리가 있다.

⑧ 이 원칙은 총회 이전에 회람되었던 각종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종(race)>의 의미도 포괄하고 있다. '인종'이 빠진 이유는 이 개념이 인간을 분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인종>이란 생물학적 차이를 합축하는 시각으로 지난 150년 간 인종간의 차이를 부각하여 편협주의, 전쟁, 그리고 인종말살(genocide)을 초래했다.

그러나 전세계 협동조합인과의 논의의 결과 <인종>을 빼는 것은 오류라고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 지닌 근본적인 철학적 입장을 잘 모르는 이들은 <인종>이라는 잣대로 어느 한 부류를 제외시킬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총회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원칙에 <인종>을 포함하여 인종문제에 대한 협동조합운동의 입장에 오해가 없도록 한 것이다.

⑨ 협동조합은 정치적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협동조합운동은 처음부터 정파나 사상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협동조합은 19세기말과 20세기에 긴장, 불안, 정쟁 등을 야기한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협동조합의 이와 같은 능력은 협동조합운동이 21세기에 제공할 수 있는 위대한 약속 중의 하나인 것이다.

⑩ 거의 모든 협동조합이 종교적 믿음에 관계없이 조합원을 받아들인다. 일부 신용협동조합은 교회나 종교단체에 의해 조직되기도 한다.

그러한 조합이 다른 종교단체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을 방해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비조합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다른 협동조합과 협력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하는 책임을 수용한다면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⑪ 조합원에 관한 원칙은 교육의 원칙 및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조합원이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간에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만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그들이 자문을 받고 그들의 의사가 전달된다고 확신할 때만이 참여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선출된 임원이나 실무책임자 및 직원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 성(性), 문화 또는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조합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⑫ 조합원에 관한 원칙은 협동조합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종종 가정 과소평가 되고있다.

이 원칙의 핵심은 협동조합과 조합을 이용하는 사람들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계는 조합의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장래 계획수립에도 반영된다. 더구나 조합원에 관한 원칙이 지닌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주된 존재이유인 조합원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헌신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2) 제 2 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단위조합에서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1인 1표),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① 민주주의란 복합적인 단어이다. 민주주의는 일련의 권리를 나타낸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지난 두 세기에 걸쳐 공통된 정치적 관심사는 민주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협동조합에서의 민주주의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포함한다. 더 나아가 협동조합의 내에서 민주주

의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어렵지만 가치 있으며 본질적인 과제이다.

1995년에 개정된 협동조합의 원칙 중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원칙의 첫 번째 표현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의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조합의 최종적인 통제권은 조합원에게 있으며, 그것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 원칙은 또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조합원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정책이 논의되고 주요 사항이 결정되면 중요한 업무가 승인되는 장이다. 노동자 협동조합, 마케팅이나 주택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조합의 일상 운영에 관해 보다 많이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② 한편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는 말은 임원이 조합원의 장·단기 이익 증진을 위해 잠시 직책을 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은 선출된 임원의 것이 아니며 임원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는 직원의 것도 아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것이며, 선출된 임원은 선출된 때부터 임기동안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

③ 민주적 관리의 원칙에 관한 세 번째 문장은 <단위조합에서 조합원은 모두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1인 1표), 다른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고 되어 있다.

이 문장은 투표에 관한 협동조합의 관례를 보여주고 있다. 단위조합에서 이 규칙은 자명하다.

그러나 단위조합이 아닌 연합조직의 투표방식은 각 조직의 처한 여건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못박아 놓지 않았다.

상당수의 협동조합 연합조직에서는 이해관계의 다양성, 회원 조합의 조합원 규모, 조합원의 사업 이용 정도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주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 하에서는 가장 작은 조합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제 3 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을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해 잉여금을 배분한다.

(1)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의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① 협동조합원 자본이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이 원칙은 조합원의 출자와 잉여금 배분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②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라는 말은 조합원이 조합의 자본조달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과 그것이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합원은 네 가지 방식으로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참여 할 수 있다.

첫째,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해 조합원 구좌에 출자하는 것이다. 출자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둘째, 협동조합이 번창함에 따라 조합 사업에서 나온 유보금을 적립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적립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은 공동으로 소유되며 조합원이 그들 조합을 얼마나 잘 떠받치고 있는가 하는 척도가 된다.

많은 나라에서 조합이 해산할 경우 이러한 공동자본은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그 조합과 관련된 지역사회기업이나 여타 협동조합에 배분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협동조합은 사업활동을 통해 적립한 액수보다 더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많은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배당금의 일부를 교대로, 또는 탈퇴 때까지 조합에 출자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경우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나 조합원은 이를 통해 조합에 지속적인 참여나 차후의 배당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넷째, 일부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출자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한 때에는 출자에 대해 공정한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경우 이율은 투기적이 아닌 경쟁력 있는 수준, 즉 정부나 일반은행의 금리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의 자본금을 통제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자본금의 조달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의사결정권의 최종권한은 조합원이 갖는다.

둘째, 조합원이 공동활동을 통해서 적립한 자본금에 대해 적어도 일부를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④ 조합 사업의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은 이 잉여금의 배분방법을 결정해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잉여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적어도 일부는 배당되지 않은 적립금>으로 조합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조합원에게 배분되지 않은 잉여금 할당방식으로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꼭 필요하다.

ⓑ 조합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보상해주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또 마땅히 선택해야 할-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는 지역 및 전국, 그리고 대륙별 및 전세계 차원에서 협동조합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잉여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4) 제 4 원칙 :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① 전 세계의 협동조합들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협동조합 운영의 법적 틀을 정한다. 조세제도와 경제·사회적 정책을 통해 정부는 협동조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자율의 원칙은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사기업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율적이듯이 협동조합도 자율적이어야 할 본질적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② 오늘날 세계 각국의 많은 협동조합이 사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 이러한 추세를 피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제 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협동조합운동은 오래 전부터 교육에 대해 남다른 헌신성을 보여왔다. 1995년 원칙에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다.

② 이 원칙은 협동조합에서 교육과 훈련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은 단순히 정

보의 전달이나 사업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이 아니다. 교육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로 하여금 복잡하지만 풍부한 협동조합의 사상과 사업활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이다.

훈련은 협동조합과 관련된 사람이 그들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게 하는 활동이다. 교육과 훈련은 협동조합 지도자들이 조합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협동조합 지도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조합의 사업활동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협동조합 지도자와 조합원간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조합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이 원칙의 마지막 부분은 협동조합이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해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정치가,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에게 홍보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몇 십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등한시한 협동조합이 허다했다.

협동조합이 앞으로도 능력에 걸맞게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이러한 책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의 이해가 없이는 협동조합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지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제 6원칙 : 협동조합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 그리고 인접국가간 및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① 1995년에 개정된 ICA원칙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이 원칙은 1850년대부터 변화를 거듭하며 강도가 바뀌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더 높아졌다. 협동조합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들 간의 합병이나 공동투자를 할 때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사실 협동조합은 조합들간의 실천적이고 엄격한 협력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한 지역차원에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조합의 소유와 참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합과 제휴 대규모 조직의 이점을 획득해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로서 모든 협동조합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과제이며, 협동조합인이 얼마나 현명한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은 공동 투자사업 가능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한층 높이면서 실질적인 방식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국제적인 공동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일개 민족국가는 국제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으므로 협동조합은 일반대중의 직

접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둘도 없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운동을 지원하는 조직과 활동을 강화하는 일에 과거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협동조합이 특정조합이나 같은 종류의 조합에 관심을 갖기는 비교적 쉽다.

그러나 연대의 가치 및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동조합 전체의 일반적인 이익을 고려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한 이유로 전체적인 협동조합운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거나 일반대정엑 <협동조합적 방식>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과 함께 모여 공동의 노력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7) 제 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그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협동조합은 일차적으로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종종 특정한 지역공간에서 조합원과의 강한 결합력을 갖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그들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책임도 있다.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원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조합원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협동조합 원칙은 협동조합운동의 수혈이다. 이는 초기에 협동조합운동에 깃든 가치에서 유래되어 오늘날까지 협동조합운동만이 가지는 전망을 제공하는 태도를 취하고 구조를 형성해 왔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협동조합들이 그들의 조직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침이다. 이원칙을은 여러 세대에 걸친 경험과 철학적 사고에 의해 형성되었으므로 본래부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이원칙들은 상이한 지역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모든 협동조합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탄력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원칙들은 협동조합인들이 그들 조직의 민주주의의 본질, 상이한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 그리고 창출된 이윤의 배분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한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협동 조합인을 효율적이게 하고, 협동조합의 성격을 뚜렷하게 하며, 협동조합운동을 가치 있게 하는데 핵심적인 특성이다.

<참고자료 5. - 정관만들기>

국내 노동자협동조합 정관

CNH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조합은 건설노동자협동조합 CNH종합건설(주)라 한다.(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조합은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소유, 공동경영, 공동노동과 분배 정의의 실현을 원칙으로 설립된 노동자 기업으로서 경제정의의 실현과 출생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 기회균등의 사회를 건설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확대하는데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의 종류)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실내건축공사업
4. 미장방수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조적공사업
7. 비계구조물
8. 창호공사업
9. 지붕・판금공사업
1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1. 철물공사업
12. 기계설비공사
13. 조합원교육과 지역사회 연대사업
14.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참여사업
15. 기타조합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4조 (정관변경)

본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2 장 조합원

제5조 (조합원의 정의)

조합원은 건설노동자협동조합 CNH종합건설(주)의 정신과 목적을 공유하고 정관, 규약 및 제규정에 동의하며 본 정관에 명시된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후(조합원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출자하기로 서약한 자도 가능)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조합원: 조합의 운영과 경영에 참여하고 노동의 의무와 교육과 회의참가 의무가 있으며 각종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출자 지분 및 노동 기여도에 따라 사업잉여금을 분배받으며 결손 및 채무에 대해 책임 진다.

② 준 조합원: 노동의 의무와 교육과 회의참가의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운영과 경영에 참여하나 의결권 피선거권은 없으며 출자지분이나 노동기여도에 따라 사업 잉여금을 분배받고 참여한 현장결손에 대해 책임진다.

③ 취업자: 취업 후 수습기간 중인 자 또는 그 이후에도 조합에 가입을 원하지 않고 노동을 하는 자로 조합원의 권리는 없고 각종 회의나 경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7조 (조합원의 가입)

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조합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출자를 하고 (조합원 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출자에 동의한 경우도 가능) 조합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① 준 조합원

수습기간을 거친 자 중 조합의 정신과 목적, 규약과 제규정에 동의하고 조합참여에 대한 자발적 의사를 표시한 사람으로 조합의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조합원회의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준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원

준 조합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노동한 사람으로 조합원 2명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의와 조합원(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된다.

제8조 (의결권,선거권)

① 조합원은 총출자 지분과 관계없이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평등하게 가진다.

② 준 조합원의 경우 발언권과 선거권은 있으나 의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③ 취업자는 업무회의에 참여하여 조합의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 (탈퇴)

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30일전에 서면으로 합당한 사유를 적어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혀야한다.

② 조합원이 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조합은 조합원 회의를 통해 탈퇴 승인 여부를 가결로 정하고, 탈퇴를 승인할 경우 이사회는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의 출자 적립금, 결손, 손해채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정산하여 통보 한다.

③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출자금과 적립금, 결손・손해 채권, 채무에 대하여 이사회가 통보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간주되며 조합원의 탈퇴는 최종적으로 조합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음으로써 종결된다 .

④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1)조합원의 자격 상실
(2)사 망
(3)제 명
(4)파 산

제10조 (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때

(3)정관, 규약 및 제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

②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최소 30일전에 제명 사실을 알려 주고 조합원 회의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 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위 제②항의 규정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조합원의 제명 결의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대항할 수 있다.

제 3 장 출자와 적립금

제11조 (출자와 증자)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나 출자좌수와 증자좌수의 합은 총 출자좌수의 15/100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신규출자를 통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조합원 회의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출자금 납입방법 및 시기)

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출자금의 납입은 5000좌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500좌 금액 이상을 출자 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식의 발행과 횟수)

① 조합은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자좌수만큼의 주식(혹은 주식증서)을 교부한다.

③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조합은 탈퇴 조합원의 주식(혹은 주식증서)을 회수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 정산에 기초해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을 반환한다.

제14조 (적립금)

적립금의 종류는 일반 적립금, 후생복지 적립금, 특별 적립금, 중앙회 적립금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① 일반 적립금

조합은 사업 확충과 결손 보전 그리고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25/100이상을 적립한다.

② 후생복지 적립금

조합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5/100이상을 적립한다.

③ 특별 적립금

조합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100이상을 적립하여 사회단체 및 공동체에 기부하거나 지역의 비영리 사업에 사용한다.

④ 중앙회 후원금

조합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20/100이상을 적립하여 협동조합 중앙회에 기부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연구 홍보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중앙회가 사용하도록 한다.

제 4 장 조 직

제1절 조합원 총회

제15조 (구성)

조합원총회는 조합원, 준 조합원,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원과 준조합원 2/3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자문위원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1회, 회계를 마감한 후 2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총회 개최 15일 이전에 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를 적어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재적 조합원 1/3이상의 요구나 조합원회의, 이사회의 결의, 감사의 서면 요구에 따라 대표 이사의 공고로 소집되며 임시총회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안건에 대해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도모하기 위해 중대한 안건의 경우에는 찬반 의견을 가진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정족수)

부의된 안건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정관의 개정과 제정 및 조합원 제명,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임원의 추천등 선거와 관련한 안건은 참석한 조합원, 준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권한)

조합원 총회는 다음의 각 항을 결의한다.

① 정관의 개정 및 제정

② 사업운영에 대한 기본방침과 예산안

③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규칙의 제정, 변경, 폐지

④ 조합원의 가입과 제명, 탈퇴의 승인

⑤ 조합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추천

⑥ 조합운영에 대한 감사

⑦ 제적립금의 처분과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결정

⑧ 조합 자산의 취득과 처분

⑨ 사업잉여금 처분에 관한 승인

⑩ 조합의 해산

⑪ 조합원회의,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⑫ 조합 정관이 규정하지 않은 주요사항

제2절 이사회

제19조(구성)

이사회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사람으로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1회씩 소집되며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 또는대표이사의 요구로 소집되며 대표이사는 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7일전에 각이사에게 통지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2/3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2조(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① 대표 이사의 선임
② 조합원(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③ 조합원(주주)총회 및 조합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④ 조합의 일상사업 및 경영에 관한 심의, 인준
⑤ 조합원, 준 조합원 가입에 대한 심의
⑥ 조합원 및 사원의 급여,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⑦ 자문위원의 위촉과 구성
⑧ 인사 및 상벌위원회의 구성
⑨ 사업잉여금의 처분
⑩ 제적리금의 처분과 사업자금 및 운영자금 결정
⑪ 조합의 금융자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결정
⑫ 소관 부서장의 선임
⑬ 회계 경리에 관한 사항
⑭ 기타 일상사업의 집행이나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등의 심의, 인준

2001年10月20日 현재

제3절 조합원회의

제23조 (구성과 소집)

조합원회의는 조합원과 준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매월 1회 개최한다. 단, 조합원 1/3 이상의 요구나 대표이사의 소집요구로 임시 조합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정족수)

조합원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권한)

조합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규약의 개정 및 제정 발의와 심의
② 사업운영에 대한 기본방침과 예산안 발의
③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규칙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발의
④ 조합원에 대한 급여 및 잉여금 처분에 대한 발의와 심의.
⑤ 조합원의 가입 동의 및 제명, 탈퇴의 심의
⑥ 조합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부서장의 추천 발의
⑦ 조합원 및 사원의 급여, 인사에 관한 발의와 심의
⑧ 자문위원회, 인사 및 상벌위원회의 위원 추천
⑨ 조합의 해산 발의
⑩ 조합의 일상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의 의결 및 집행
⑪ 조합원의 현장 배치에 관한 사항
⑫ 조합원총회,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⑬ 기타 조합의 정관과 규약이 규정하지 않는 주요사항에 대한 발의

제4절 현장운영회의

제26조(구성과 소집)

현장운영회의는 기술본부장, 현장소장 및 총무, 공사관리팀, 기술팀, 자재팀 조합원과, 회계팀장의 참석과 대표이사, 관리본부장의 참관으로 성립하며 월 1회 개최한다. 단, 2개이상의 현장소장(혹은 총무)의 요구나 기술본부장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 (권한)

현장운영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각 현장의 작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의 논의와 결정
② 각 현장의 작업 조정
③ 기술개발및 신공법에 관한 사항
④ 자재및 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조합원회의등에 부의한 안건의 공유
⑥ 기타 현장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5절 업무, 관리회의

제28조 (구성과 소집)

업무, 관리회의는 관리본부장의 주재하에 관리본부(회계,총무,기획), 조합원의 참석과 대표이사, 기술본부장의 참관으로 성립하며 월 1회 개최한다. 단, 대표이사나 관리본부장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 (권한)

업무, 관리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조합의 사무 및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조합 재정, 회계의 운용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의 인사관리 및 임금책정에 관한 사항
④ 출자금 및 이익배당금에 관한 사항
⑤ 조합원회의등에 부의된 안건의 공유와 심의
⑥ 교육, 회의등 조합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6절 영업회의

제30조 (구성과 소집)

영업회의는 영업본부장의 주재 하에 영업, 개발팀 조합원과 회계팀장의 참석과 대표이사,기술본부장 관리본부장의 참관으로 성립하며 월 1회 개최한다. 단, 대표이사나 영업본부장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 (권한)

영업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조합의 영업에 관한 사항
② 조합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④ 조합원회의등에 부의된 안건의 공유와 심의
⑤ 조합운영의 방향및 영업에 관한 사항

제7절 임원과부서

제31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조합원회의의 추천발의와 조합원총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조합을 대표하며 다음의 역할을 갖는다.

① 조합원(주주)총회의 의장 및 이사회, 조합원회의의 주재, 기타회의참관
② 조합의 상시적 운영과 경영에 대해 책임진다.
③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이사)

이사는 조합원회의의 추천발의와 추천을 통해 조합원(주주) 총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①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정관과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조합의 재정, 경영 및 사업을 책임지고, 조합원(주주)총회, 조합원회의에서 위임한 안건과 사업을 심의하고 시행한다.
② 이사는 역할에 따라 기술본부장, 관리본부장, 영업본부장등 필요한 직함을 갖는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 (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은 조합원회의의 추천발의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조합의 재정과 일상업무 및 사무를 총괄하고 총무팀. 회계팀. 교육홍보팀을 총괄하며 업무, 관리회의를 주재한다. 관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은 조합원회의의 추천발의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각 현장의 작업과 운영을 총괄하고 공사관리팀과 기술팀, 자재팀을 총괄하며 현장운영 회의를 주재한다. 기술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은 조합원회의의 추천발의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사업수주를 위한 일상업무를 총괄하고 영업팀과 개발팀을 총괄하며 영업 회의를 주재한다. 영업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감사)

감사는 조합원회의의 추천발의와 추천으로 조합원(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조합의 회계와 직무에 대해 감사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제37조 (부서 및 부서장)

조합은 조합원회의의 발의와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팀을 설치할 수 있고, 팀장은 대표이사의 추천과 조합원회의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8절 자문위원회

제39조 (구성)

조합은 조합의 발전과 경영, 재정,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한다.

제40조 (자문위원의 위촉)

자문위원은 조합원회의나 이사의 추천발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서 위촉한다.

제41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자문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며 대표이사와 관리본부장이 참관하여 조합의 사업과 현황을 보고하며 자문을 구한다.

제42조 (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제 5 장 회 계

제43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45조(결손보전)

① 조합은 전년도 이월 결손금이 있거나 사업연도 말에 결손이 발생한 때는 미처분 잉여금 일반 적립금, 후생복지 적립금, 특별 적립금, 중앙회 후원금 등의 순으로 보전하고 잔여손실금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여러 사업 년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걸쳐 추가 증자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잉여금처분)

본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조합은 매 사업 년도 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과 제 1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배당한다.

② 잉여금 배당은 조합원의 출자지분 및 노동 기여도에 따라 배당하며 배당금은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자지분에 의한 배당은 매년 결산후 잉여금의 20/100을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한다.

④ 노동기여도에 따른 배당은 매년 결산후 제14조에 정한 잉여금의 20/100을 조합원의 노동기여도에 따라 배당한다.

⑤ 조합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산정하고,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⑥ 조합은 결손보전 또는 배당을 위하여 총회 결의에 따라 잉여금의 일부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 6 장 해 산

제47조 (해산사유)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조합은 해산한다.

① 조합원 총회의 해산결의

② 파산

제48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분)

해산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부 칙

제1조(적용범위)

본 조합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동조합의 원칙과 민법 중 제 81조, 제 87조,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운영세칙 제규정에 관하여)

조합은 정관이 정하지 못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관의 정신에 준하여 별도의 운영세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제규정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지사설치)

이사회의 결의로 지역에 지사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체 조합원(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에 시행한다.

- 운 영 세 칙-

제1조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조합의 각종 회의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년4회 분기별로 개최되는 이사회는 매월 개최할 수 있다

(나)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이사회와 함께 개최할 수 있다.

(다)현장운영회의가 운영될 때까지 현장연석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라)업무관리회의와 영업회의는 결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마)조합은 조합원회의와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팀은 원할한 업무를 위해 팀별 회의를 매주 1회 진행한다.

③ 경영관리회의는 매주 1회 진행하며 필요시 담당자를 회의에 참여시켜 보고받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조 (부서의 설치)

조합은 필요에 따라 다음의 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공사관리팀: 각 현장의 원활한 업무조정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며 하도급 업자의 관리와 하자보수를 위한 전문팀을 관리 및 운영한다. 현장에서 노동하는 조합원은 공사관리팀에 배치된다. 노동기여도 및 근태자료를 제공한다.

② 기술팀: 현장의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신공법의 개발 및 소개, 견적, 기술교육을 담당한다

③ 자재팀: 자재 및 장비 구입과 각현장의 자재사용 현황, 현장간의 자재 이동 등을 지원한다.

④ 총무팀: 대관업무, 면허관련업무, 복지사업을 주관하고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인사 관리 및 임금책정, 조합원의 출자금과 이익 배당금의 분배 등을 관장하며 각 부서의 행정과 문서 수발을 지원한다.

⑤ 교육, 홍보팀: 조합의 회지, 회보, 홍보지의 발간과 교육을 통해 조합원의 동기 부여와 협동정신을 고양시키고, 협동조합간의 연대에 관한 사업과 협동조합중앙회 및 타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⑥ 회계팀: 투명하고 과학적인 회계시스템의 구축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자금지원과 운영을 하며 수금, 자금소요파악 및 집행, 현장자금 관리 및 집행을 관장한다.

⑦ 영업팀: 공사수주와 이를 위한 상담, 교섭, 입찰참가, 계약, 일상 영업 등을 한다.

⑧ 개발팀: 분양, 임대등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사업성 검토, 시장조사, 건설 사업의 국내외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조합의 사업방향을 총괄한다.

기타 조합원회의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

제3조 (교육)

조합규약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한다.

① 신규조합원 교육

(가)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을 위해 연 6회 이상의 신규조합원 교육을 실시한다.

(다)신규조합원 교육의 내용은 다음을 기본으로 별도의 계획에 따라 수립, 실행한다.

◇협동조합의 정신과 목적, 지향

◇노동자협동조합 CNH종합건설(주)의 목적과 지향

◇노동자협동조합 CNH종합건설(주)의 정관, 규약 및 제 규정

◇건설노동자로서 필요한 기술교육

◇기타 조합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조합원 교육

(가)조합은 조합원들의 협동조합 정신 고양과 건강한 노동(자)의식의 고취,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 연6회의 협동정신 교육을 실시한다.

(나)조합은 조합원들이 기술력 향상을 위해 연6회 이상의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다)조합원 교육은 필요에 따라 조합원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내용과 형식은 조합원회의와 이사회의 결의로 조정될 수 있다.

제4조 (준 조합원의 조합원 승인)

준 조합원은 최소 3개월 이상 현장에서 노동하거나 조합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한 이후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현장의 운영과 관리)

① 현장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총괄적 책임은 기술본부장이 진다.

② 현장은 소장, 총무 2인을 기본 인적 구성으로 하며 현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한다.

③ 공사수주후 조합은 조합원회의를 통해 소장을 선정하고 소장은 수주액의 70% 내에서 현장 경비를 포함한 실행견적과 작업공정표를 기술본부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④ 현장소장은 현장의 관리와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책임을 진다.

⑤ 현장총무는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익일 공사관리부에 제출하며 회계원장과 분개장을 작성한다. 작업일지는 당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마감한다.

⑥ 현장소장은 공사진행 과정 중 월 2회 이상 중간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현장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관리팀은 매일 오전 각 현장의 공정과 작업인원 자재 현황을 점검하여야하며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현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술본부장은 현장소장회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은 조합원회의의 논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각 현장은 전체 경비 중 5%내에서 소장,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원의 판공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6조 (출자지분 및 노동기여도에 따른 잉여금의 배분)

① 출자지분에 의한 잉여금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지급시기: 연말정산 후 조합원 총회 시

(나)산출방법: 당기순이익총액 ×20/100×해당조합원출자액/총 출자액

(다)지급방법 :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투자형식), 일시불(혹은 분할)로 지급한다.

② 노동기여도에 의한 잉여금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지급시기: 연말정산 후 조합원 총회 시

(나)산출방법: 당기순이익총액 ×20/100×해당조합원노동기여도/총 노동량

(다)지급방법: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투자형식), 일시불(혹은 분할)로 지급한다.

(라)노동기여도의 산출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현장 결손에 대한 처분)

① 결손에 대한 처분은 본인(현장에 관계된 조합원과 취업자중 가해자)에 의해 고의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노동자 협동조합 CNH 종합건설(주)의 취업규칙 제7장에 준하여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조합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8조 (휴직)

조합원이나 사원이 휴직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회의와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협력업체의 선정)

협력업체의 선정은 당해 소장의 의견을 듣고 현장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운영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적용된다.

제2조 이 운영세칙은 건설노동자 협동조합 CNH 종합건설(주)의 정관, 취업규칙이 정한범위 내에서 규제를 받는다.

제3조 본사 관리본부 회계지출에 관한 운영세칙은 별도로 둔다.

제4조 이사회의 논의와 조합원회의의 결정으로 운영과 관련한 항목은 운영세칙에 추가 될 수 있다

참여해주신 단체

광주지역외국인무슬림보호협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기독교대한감리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불교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타,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성공회대학교인권평화센타, 성공회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안양전진상복지관이주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타, 이주·여성인권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기독교장로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IOM국제이주기구 (가나다순)

후원해주신 단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타
이주·여성인권연대
노동일보

※ 본 연구원은 이번 국제민간포럼을 위해 참여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관련단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